

애완견관리에 관한 법적 문제

A study on dog control law

연구자 : 김수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자성명: 金秀珍

영문성명: Kim, Soo-Jin

국 문 요 약

우리 나라는 현재 대략 애완견 3백만 마리, 애견인구 약 천 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애완견사육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최근 도시공원법개정 입법예고와 관련되어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과 애완견사육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간의 의견이 극하게 대립되었다.

애완견사육과 관련된 문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파악해야 한다. 첫째는 우선적으로 개와 개의 소유주와의 관계에서 적합한 사료와 물, 적절한 운동 등을 보장하며 동물을 학대하지 않을 의무 등 동물보호적 측면이고, 둘째는 개가 물어서 발생하는 사고, 개의 배설물과 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 원하지 않는 개의 과다공급, 전염병발생, 유기견 발생 등의 위험 및 위생관련문제로 개의 소유주와 기타 사회공동체구성원간에 해결되어야 할 동물관리적 측면이다. 양자의 해결을 위해서 개의 소유주의 사회적 책임감이 강하게 요구되는 바이다. 이를 둘러싼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간의 분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국가는 이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애완견사육을 둘러싼 분쟁을 조화롭게 해결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현재 우리 나라의 상황을 바탕으로 문제점들을 적시하고,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분석을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로는 주로 미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애완견관리법제를 대상으로 애완견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 문제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애완견 관리와 관련된 현행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키 워 드 : 애완견관리, 애완견등록제, 동물에 의한 교상사고, 공원관리, 목줄의무, 위험한 개, 배설물처리

Abstract

Dogs were the first animals to be domesticated by humans, and have been an important and valued part of many human communities for thousands of years. In today's society there is growing concern about how dogs are treated, how public safety are protected against dogs and how the responsible guardianship of dogs with regard to the ownership of dogs are reinforced. It might be the necessity of the community to regulate the latitude given to dogs and their caretakers handling in public areas.

This Paper will give the basic information relating to dog control legislations of other countries, in the US, Germany, Australia and New Zealand.

First, an overview of the sources of current situation of dog control in Korea is presented. Second, this Paper will address the legislation relating to dog control, in particular, in public nuisance, disposing of dog droppings, dog registration, barking dogs, etc. Finally, the local government brings considerable experience to the public debate about the best means to improve public safety and the effectiveness of dog control effort and make bylaws. In conclusion, this Paper aims to propose the improvements in the current legislation comparing with other jurisdictions.

※ Key Word : dog control act, dog registration, dangerous dog, dog muzzling, leashing, public nuisance, responsible dog ownership

목 차

국 문 요 약	3
abstract	5
제 1 장 머리말	9
제 2 장 우리나라의 동물관련법제와 애완견문제의 현황	13
제 1 절 우리나라의 동물관련법제	13
제 2 절 애완견문제의 현황과 현행법의 내용	14
1. 공원 및 공공장소의 출입여부	14
2.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문제	17
3. 공동주택에서의 애완동물의 사육	19
4. 환경오염 및 공중위생	20
5. 애완동물관련산업	25
제 3 장 외국의 동물관련법제분석	27
제 1 절 동물의 지위	27
1. 헌법상 동물의 지위	27
2. 민법상 동물의 지위	28
3. 형법상 동물의 지위	29
제 2 절 각국의 동물관련법제	30
1. 영 국	31
2. 미 국	32
3. 독 일	34
4. 일 본	36
5. 오스트레일리아	37
6. 뉴질랜드	38

제 4 장 애완견사육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그 법적 해결방안	41
제 1 절 개가 물어서 발생한 부상·사망사고	41
1. 미 국	42
2. 독 일	45
3. 오스트레일리아	48
4. 뉴질랜드	49
5. 우리나라	50
제 2 절 공원 및 공공장소에의 입장제한	52
1. 미 국	52
2. 독 일	53
3. 오스트레일리아	55
4. 뉴질랜드	56
5. 우리나라	56
제 3 절 생활방해	57
1. 배설물처리	57
2. 소 음	58
제 4 절 개의 등록과 이름표착용	61
1. 미국의 개등록제(Pet licensing)	61
2. 독 일	62
3. 오스트레일리아	64
4. 뉴질랜드	64
5. 우리나라	65
제 5 장 멧음말	67
참 고 문 헌	75
부 록	81

제 1 장 머리말

동물은 식물과 대비되는 인간이외의 생물이다.¹⁾ 과거 동물들은 인간에게 사냥의 대상으로, 농업에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 길들여졌지만, 현재 동물들이 인간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되면서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반면에 인간은 점차 자기중심적이고 마음은 고갈되어가지만, 동물의 세계는 항상 천성 그대로이며 순수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런 동물과 접함으로써 상실되어 가는 인간본연의 성정(性情)을 되찾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동물을 애완동물(愛玩動物, pet)이라 부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사육되는 온순한 동물(tame animal treated with fondness)”,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²⁾로 표현되고 있으며, 주로 개, 고양이, 햄스터, 거북이, 물고기 등을 말한다.

외국 실정법상의 애완동물의 개념은 “특히 가정에서 키워지는 개인적인 즐거움과 동료감(companionship)을 주는 동물들”로 정의되고 있다.³⁾ 우리 나라에서도 2002년 농림부 동물보호법개정안에서 제2조 제3호를 신설하여 “애완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정서함양과 동반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그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⁴⁾고 규정한 바 있으나,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귀여움을 받는 존재로 보호받는 ‘애완동물’이라는 개념대신 인생을 함께 한다는 뜻의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란 개념을

1) 동물의 개념은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상이하다. 미국이나 뉴질랜드의 경우 동물보호법 등에서 대상이 되는 동물을 척추동물, 온혈동물로 특정하나(USC 2132 (g)), 우리의 경우 법에서 ‘동물’과 ‘가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종류를 나열하는데 그친다. 실험동물, 애완동물, 농장동물 등의 개념은 아직 입법화되고 있지 못하다.

2)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3) 애완동물보호를 위한 유럽협정(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t animals) 제1조 제1항(<http://sedac.ciesin.org/pidb/texts/pet.animals.1987.html>); 오스트리아 티롤의 애완동물보유규정(Tiroler Heimtierhaltungsverordnung 2002) 제1조 제1항.

4) 현재 동물관련단체들은 이 조항이 식육건을 동물보호법으로부터 배제하려는 견해라며 농림부의 동물보호법개정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http://koreananimals.or.kr>).

쓰자는 움직임이 활발하다.⁵⁾ ‘반려동물’이란 개념은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노벨상 수상자인 동물 행동학자 K. 로렌츠의 80세 탄생기념 국제 심포지엄(주제: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the human-pet relationship))에서 개·고양이·새 등의 애완동물의 가치성을 재인식하여 새로운 용어로 부르도록 제안한데서 시작되었다.⁶⁾

애완동물 중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개는 이미 기원 후 1세기에 집필된 플리니우스의 저작 속에서도 그 역할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고⁷⁾, 시대에 따라 귀족의 자기과시를 위한 신분을 나타내는 징표로, 어린이를 지켜주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현대에 와서 고령자의 고독을 치유하고, 맹인안내견, 인명구조견, 보청견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인간사회의 중심에서 애완견의 사육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들의 심각성도 날로 증가해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애완견의 숫자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못하였으나 한국애견협회에 따르면 약 3백만 마리에 이르며, 1년에 4회 이상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개를 애완견으로 규정할 경우 2002년 현재 약 150만 마리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다섯 집 가운데 한 집에서 개를 기르는 셈이며, 애견인구는 거의 천만에 달한다고 할 것이다.⁸⁾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

5) 과거의 애완동물은 pet으로 표현하며 주로 개,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는 종속관계를 의미하였고, 현재의 애완동물은 companion animal로 개, 고양이, 토끼, 파충류, 설치류, 조류 등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고 종속적 수평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미래의 애완동물은 family로서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평적 종속관계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한다 (신남식, “인간과 동물의 상호관계”, 03 1st HAB(Human Animal Bond) 국제 심포지움(2003. 11. 2) 자료집 14면). 애견단체에서는 애완견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애견’이란 용어를 권장하고 있다 (http://feature.media.daum.net/PrintPage/030930_dog/article/html).

아름팜 매거진 제5호, 「버리세요, 애완동물!, 주워 받으세요, 반려동물!」, (<http://www.withanimal.net/tt-cgi/tt/board.cgi?act=read&db=m01&page=1&idx=6>) 참조.

6) 두산대백과사전

7) 우리 아름다운 숙녀들이 라틴어로 요정을 뜻하는 “멜리타에이(Melitaei)”라 부르며 그 개들을 사랑스럽게 길렀다. 작고 사랑스러운 개를 주위에 두거나 그 요정을 가슴에 안는 것만으로도 그녀들의 불안은 사라진다. J.C. 블록지움(과학세대 옮김), 『인간과 가축의 역사』 1996, 86면.

8) 『소비자시대』, 2003. 3. 13~14면.

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현 상황은 사회적으로 애완견의 사육으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의 소유주의 에티켓과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수인의무로 해결되도록 방치되고 있다.

애완견사육과 관련된 문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파악해야 한다. 첫째, 동물보호적 측면에서 개와 개의 소유주와의 관계이다. 개의 소유주는 개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주고, 적절한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병이 걸렸을 때 신속한 치료를 시켜야 하며, 동물을 학대하지 않을 의무 등을 지켜야 한다.⁹⁾ 둘째, 개는 인간 사회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개의 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개의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한다.¹⁰⁾ 개가 물어서 발생하는 사고, 개의 배설물과 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 원하지 않는 개의 과다공급, 전염병발생, 유기견 발생 등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간의 분쟁을 야기할 뿐 아니라 이의 해결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경우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킬 것이다.¹¹⁾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

9)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은 개의 사육에 있어서의 개 소유주가 지켜야 할 최저한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오스트리아 Mindestanforderungen für die Haltung von Hunden in Tirol, 독일 Tierschutz-Hundeverordnung vom 2. Mai 2001 (BGBl I, 838), 뉴질랜드 Code of Recommendations and Minimum Standards for the Welfare of Dogs.

10) 유럽위원회는 “애완동물의 보호에 관한 협정(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t Animals)”의 서문에서 인간에게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할 도덕적 의무를 가지며 애완동물은 인간과 특별한 연관성을 가지고 그 삶의 질에 지속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그러나 애완동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인간이나 다른 동물들에게 위생, 건강,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을 밝혔다(원문 <http://sedac.ciesin.org/pidb/texts/pet.animals.1987.html>). 이는 오스트레일리아 수도특별구의 책임있는 개소유주를 위한 헌장(Charter for responsible dog ownership in Australia Capital Territory)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http://www.act.act.au/enviro/pets>).

11) 애완동물을 키우는 비용, 즉 먹이, 진료비 등은 키우는 사람들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지만, 납세자들이 지는 주요 세금 부담으로서 애완동물 기르기에 따른 간접비 역시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영국정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는 사상자를 내는 교통사고의 약 0.6%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경상이 대부분(76.4%)이지만 중상의 경우도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이며, 0.9%정도는 사망사고였다. 사상자없는 교통사고의 무려 16%를 개가 유발한다는 다른 조사도 있다. 1984년의 조사에서는 생산성 저하, 재물파손, 의료보험, 경찰업무, 행정 부담 등의 측면에서 이러한 사고로 인한 금전적

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주에게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개를 키우는 사람의 에티켓과 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간의 합의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 모두가 지키는 사회상규라 할 지라도 지키지 않는 소수가 존재할 경우 불편을 입게 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사회적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어렵게 될 것이므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애완견사육에 관한 기준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제2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애완견사육과 관련된 문제들과 이의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다. 제3장에서는 외국의 동물관련법제를 통해 동물보호와 관련된 법, 공동체와 조화롭게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책임 있는 소유주의 행동을 규정한 법령들을 분석해보겠다. 제4장에서는 애완견 사육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 즉 개가 물어서 발생하는 사고, 공공장소의 출입제한문제, 위생 및 생활방해, 개의 등록과 이름표착용문제 등으로 분류하여 외국의 입법적 해결방안을 소개하고, 그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해결방안을 분석해보겠다. 제5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우리 나라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애완견을 관리해야 하는가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손실이 연간 약 4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임스 서펠·운영에 옮김, 『동물, 인간의 동반자』, 들녘 코기토, 2003, 35~36면.

제 2 장 우리나라의 동물관련법제와 애완견문제의 현황

제 1 절 우리나라의 동물관련법제

우리나라의 동물관련법제로는 1991년에 제정된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된 동물보호법이 있는데, 동물보호의 극히 기본적인 사안만을 규정하고 있다.¹²⁾ 시대의 변화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1999년과 2002년에 동물보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제시 등이 있었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2002년의 동물보호법개정안은 동물학대 등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의 유기방지를 위해 개체 표식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애완동물판매업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법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¹³⁾

그 밖에 동물에 관한 개별법으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있고, 야생동물의 경우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새나 물고기에 대해서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 축산법 등에서 '가축'의 종류를 나열하며 다루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실험동물과 관련해서는 실험동물의 생산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2년 2월 21일에 실험동물법안이 의원 발의되었다. 현재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나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¹⁴⁾ 애완동물의 공공장소의 출입여부와 관련된 법으로는 자연공

12)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동물의 보호, 제4조 동물보호운동, 제5조 적절한 사육·관리, 제6조 동물학대등의 금지, 제7조 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제8조 동물의 도살방법, 제9조 동물의 수술, 제10조 동물의 실험 등, 제11조 적용의 제한, 제12조 벌칙.

13) 자료는 한국동물연합(<http://www.kaap.or.kr>) 자료실 동물보호법 2번 참조. 2004년 농림부는 동물학대금지조항을 구체화한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중앙일보 2003. 12. 5).

14)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사이트(<http://www.assembly.go.kr>)에서 검색이 가능함. 서울대는 그동안 국내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없어 무계획적 실험, 동물학대, 사후

원법, 2003년 개정입법예고된 도시공원법, 애완동물의 공격 내지 배설물 처리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이 있으며, 애완동물의 사체처리에 관해서는 폐기물처리법이 적용되는 등 각종 법률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애완동물과 관련하여 유기동물보호소설치에 관하여 지침이나 조례로써 이를 정하고 있다.

제 2 절 애완견문제의 현황과 현행법의 내용

1. 공원 및 공공장소의 출입여부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의 출입이 금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개들의 배설물처리문제와 개가 목줄에 묶여 있지 않을 경우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잠재적 위험성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¹⁵⁾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리공원 등에 개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기준이 일치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애견인 및 일반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¹⁶⁾

관리 소홀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해왔으며, 2004년부터 연구계획단계에서부터 동물실험위원회(ISCUC)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2003. 11. 17.).

15) 서울시가 2000년 10월 만13세 이상 500명(남녀 각각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1.2%가 애완동물의 공원 출입에 반대했으며 48.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동아일보 2001. 5. 1). 반대하는 이유로는 '배설을 아무 데서나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0.7%로 가장 많았다(뉴스메이커 512호, 2003. 2. 27). 이에 대해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공원에 데리고 갈 때 목줄에 입가리개까지 채우라는 서울시의 규제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 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인명구조연합회 동물학대방지연합 등 7개 단체들은 최근 "선진국처럼 광견병 예방필증 등을 소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16) 인천 부평공원 등의 근린공원에서 개 출입을 금지하였고, 인천대공원에서도 애완견 출입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의 경우는 개의 입장이 금지되어 있고, 이에 대한 공원이용 수칙을 마련할 계획이다(동아일보 2003. 8. 10). 서초구는 공원에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주민에게 경범죄처벌법에 근거해 이를 단속한 뒤 경찰에 통보, 5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원 내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사람을 신고하는 주민신고센터(570-6395~6)를 운영하기로 했으나 2003년 12월까지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었다(중앙일보 2003. 3. 6.).

(1) 공원의 출입여부

1) 국립공원 · 도립공원 · 군립공원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인 국립공원 ·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공원법 제29조 제1항¹⁷⁾에 근거한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6조 제4호¹⁸⁾에서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안에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 ·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위반행위를 공단 직원이나 시 · 도 소속 공무원¹⁹⁾이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인적사항 및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하고,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3의 6번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여야 한다(법 제46조 제1항, 제2항).

2) 도시공원

2003년 9월 9일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구역에서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행위를 금하고,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법²⁰⁾ 개정안 입법예고가 있었다. 그러나 의견수렴기간동안 애견인들의 반대가 들끓자, 2003년 11월 10일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도시공원 · 도시공원구역 · 녹지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및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

17)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 · 이용 · 보안과 그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8) 2001년 9월 29일 개정됨.

19) 자연공원법 제34조 (사법경찰권)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이 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20)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도시공원법 제2조 제1호).

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구역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를 금하고,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²¹⁾

3) 어린이놀이터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 어린이놀이터와 공원을 대상으로 위생검사를 하고 있고²²⁾, 어린이놀이터의 모래에서 개회충 알²³⁾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애완동물의 어린이놀이터에의 출입제한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2002년 9월 어린이놀이터에 애완견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각 자치구에 지침을 내렸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4) 동물원

서울대공원 내 동물원의 경우는 동물원관리규칙에서 인수공통전염병 등을 이유로 동물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21) 동법 제30조.

22)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03년 4~10월 시내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 놀이터 555곳의 모래를 검사한 결과, 16곳(2.9%)의 모래에서 개 회충란이 검출됐다고 11월 12일 밝혔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02년 7·9·11월 초등학교 운동장 36곳과 아파트 놀이터 14곳 등 50곳을 대상으로 흙 속의 기생충을 3차례 조사한 결과 64.0%인 32곳에서 한번 이상 개회충·분선충 따위 기생충 알이 발견되었으나 2003년 11월까지 토양 방역과 질병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행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다(한겨레 2003. 11. 28).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확인한 뒤 1년이 지나도록 오염된 운동장과 놀이터의 모래 교체·약제 살포·훈증 소독 따위 방역활동을 외면하고 재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광주시 측은 “이 조사가 표본조사인데다 교육청과 자치구로 관할이 나뉘는 탓에 정보 전달과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며 “약제 살포와 훈증 소독은 효율이 낮은데다 부작용도 뒤따를 우려가 있어 애완동물을 기르는 시민에게 주의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고 답변했다.

23) 중앙일보, 2003. 8. 17. 감염된 개의 배설물을 통해 나온 회충란은 섭씨 25~30도의 온도와 85~95%의 습도에서는 감염력이 생겨,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서도 전염되지 않지만 오염된 모래가 어린이들에 감염시 내장, 특히 간, 폐, 뇌 및 때로는 눈과 그 외 장기에 기생충 유충과 관련된 만성육 아종성병소가 나타날 수 있다 (<http://sihe.seoul.go.kr/STAR/chuk26.htm>). 서울시환경보건연구원 보고서.

(2) 대중음식점, 백화점 및 상점

일반적으로 법에서 대중음식점, 백화점 및 상점의 출입을 금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식품유통업매장 등에서는 객장의 지침에 따라 애완견의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식품구매를 할 동안 입구에 있는 고객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중음식점의 경우도 대부분 애완견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 애견이 출입할 수 있는 애견 Café 가 신종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부 상점에서는 애완견의 출입금지표지를 붙여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숙박시설의 경우 각각의 경우가 다르나 애완견의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라도 개와 함께 엘리베이터 탑승함으로써 다른 숙박객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1~2층을 배정하는 등 신경을 쓰고 있다.

2.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문제

애완동물의 교통수단이용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법에 규정된 바는 없고, 다만 각 교통수단별로 자체적으로 운송규정에서 고객불편처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비행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운임료를 내지 않는다.

(1) 시내버스의 이용

舊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서 동물이 여객자동차에 탑승했을 시 운전자가 탑승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2000년 1월 28일에 폐지되었다. 現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운송약관)의 규정에 의거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약관 제10조 제3호에 의하면 동물은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애완용의 소동물 및 공인된 기관의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은 금지품목이 아니다.²⁴⁾ 만약 이동장 또는 가방사용한 애완용의 소동물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할 경우 운수사업법에 의거 법규위반시 운수사업자는 물론 운수당사자 즉, 운전기사도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벌받을 수 있다.

24) 전세여객자동차운송약관 제15조 (여객의 금지행위) 제2항 제2호와 고속버스운송약관 제26조에서는 “동물은 차내 탑승이 안되나 공인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인도견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동물연합 자유게시판 <http://www.kaap.or.kr>).

(2) 지하철, 도시철도, 기차를 이용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1조,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5조 제1항은 여객이 동물(다만 용기에 넣은 소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장애자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은 제외된다)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철도법 제18조에서도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할 물건이나 나쁜 냄새 등으로 인하여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 기타의 물건은 차내에서 휴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규정상 지하철에서는 개, 고양이 등의 동승이 불가능하고, 기차의 경우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철도직원의 직무상 지시로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다.

(3) 비행기 이용

항공사마다 그 규정이 다를 수 있겠으나 대한항공의 경우 애완동물운송에 관한 규정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여객기에 태울 수 있는 애완동물은 개, 고양이, 새 등 3종류인데, 생후 8주미만의 애완동물과 아메리칸 핏볼 테리어, 롯트와일러, 도베르만 등 투견은 원칙적으로 여객기에 태울 수 없다.²⁵⁾ 애완동물의 크기에 따라서 주로 3kg 미만의 애완동물과 pet box²⁶⁾(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15cm 미만)를 포함하여 5kg미만인 경우에는 기내반입이 가능하나, 5kg이상일 경우에는 수하물칸으로 운송되어진다.²⁷⁾ 애완동물의 건강진단서의 구비여부는 국내선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으나, 국제선의

25) 토끼, 햄스터(설치류), 거북이, 뱀(파충류), 돼지, 병아리(가축)등은 항공기와 고객의 안전상 모두 운송이 불가능한 종류들이다.

26) 애완동물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송을 위해서 잠금 장치가 있고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등의 재질로 견고해야 하며,환기 장치 및 방수 처리가 되는 천 혹은 가죽 재질의 운반용기(흔히 버버리형이동가방이라 함)를 사용하여야 함.

27) 애완동물과 케이지의 무게에 대한 해당구간의 요금에 애완동물의 운송비가 부과되고(맹인 인도견의 경우는 무료), 다른 승객의 불편을 염려하여 뒤편으로 좌석 배정을 받게 된다. 다음은 짐칸으로 실릴 경우, 애완동물을 넣은 상태의 케이지는 세변의 합이 246cm 이하, 32kg 이하가 적합하다고 한다.

경우는 기종별, 항공사별, 목적지별로 제한 조건이 상이하하여 별도의 검역 검사와 필요한 서류(동물병원 혹은 검역소에서 발행한 건강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등)를 구비하여야 한다.²⁸⁾

(4) 자가운전의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35조 제4항).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게 된다(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호).

3. 공동주택에서의 애완동물의 사육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법제상으로는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행위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²⁹⁾ 그러나 개짖는 소리와 냄새 등으로 인해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가 많아 이웃과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입주자에게 관리비, 사용료를 증액하려 하거나³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사육을 금지하도록 일방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어왔지만, 우리나라의 주택현황 중 공동으로 모여 사는 형태의 주택이 62.8%에 해당하는 사실³¹⁾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공동주택에서의 애완동물사육금지

28)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입국시 여객기로는 애완동물의 반입이 금지됨.

29) 이 조문의 해석으로 공동주거에 피해를 미쳤을 경우 관리주체의 간섭권에 대한 근거조항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공동주택에서 동물기르기”, 『동물은 내친구』 1997. 7. 4면.

30) 서울 강남의 몇몇 아파트는 월 5만원의 추가 관리비를 받으려다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동아일보 1998. 10. 14).

31) 통계청에 의한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0년 기준 자료에 의하면 주택수 총 11,472,300호 중 단독주택 4,269,300호(37.2%) 아파트 5,479,700호, 연립 및 다세대주택 1,321,900호, 그 외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대도시 아파트가구의 15% 이상이 개를 키운다는 것이 개사료회사나 동물약품업체의

를 요구하기도 어렵다. 절차상으로도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2항에 의해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면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그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4. 환경오염 및 공중위생

(1) 동물전염병예방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소·말·당나귀·돼지 등과 함께 개를 가축으로 정의하고, 제2호 나목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서 광견병을 지정하고 있다. 광견병 예방주사는 기초접종으로 생후 3개월 이상 시 1회 접종하고 매 6개월(봄, 가을)마다 1회씩 추가접종을 하여야 한다.³²⁾ 이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년에 2번 광견병 예방 일제접종기간으로 설정하여, 서울특별시가 예방주사약품값을 지원하고, 개의 소유주는 2000원의 예방접종 시술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³³⁾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개 주인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지만, 대한수의사협회는 개에 대해 혼합예방주사(DHPPL)를 생후 6주~8주부터 3주 간격으로 3~5회 기초접종한 뒤 매년 1회 추가접종하며, 코로나 장염 및 전염성 기관지염에 대한 접종도 혼합예방주사와 병행하여 2~3회의 기본 접종을 한 후 해마다 한

추정이다(동아일보 1998. 10. 14).

32) http://animals.seoul.go.kr/info/info_02.html (용량에 따라 1년에 1회도 가능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검사·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 또는 투약을 한 가축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 또는 투약을 실시한 사실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3) 서울특별시는 2000년도 예산액으로 26,950천원(농림부의 국고보조금 70%, 각 구청 30%)을 책정하였으며 시 개사육두수의 45%는 관수용방역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자율예방접종을 유도하고 있다(<http://sihe.seoul.go.kr/STAR/chuk23.htm>).

차례씩 추가접종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기생충구제는 사람의 건강과 위생상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생후 10개월까지는 1개월에 1회 투약하고, 생후 1년 이후에는 3~4개월에 1회 투약하도록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³⁴⁾

(2) 유기동물처리

최근 애완동물 사육의 증가는 주인들이 버리거나 길을 잃은 동물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³⁵⁾ 이렇게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기동물”이라 하는데(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제2조 1호; 경기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 제2조), 이러한 동물들의 방치로 인해 전염병 및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어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동물들에 대한 학대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적극 보호되어야 한다.³⁶⁾

34) <http://www.kaha.or.kr/main.htm>

35) 서울시의 보고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각 구청이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주로 개와 고양이)은 1997년에는 1035마리에 불과했으나 2000년 2016마리로 2000마리를 처음 돌파한 데 이어, 2001년에는 서울에서 주인을 잃고 떠돌다가 잡힌 동물은 모두 3279마리로 전년도보다 61.5% 늘었고, 2002년에는 총 3404마리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동아일보 2002. 6. 23; 세계일보 2003. 5. 14).

36) 동물보호법 제7조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군”이라 한다)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단체 또는 학술연구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산출 기타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유기동물에 대한 처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게 된다. 유기동물들을 포획하여 보호시설에 보호하거나 위탁보호를 할 경우 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특징, 포획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후 1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학술연구단체, 동물보호단체에 기증하거나 분양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제4조 내지 제7조; 경기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 조례 제3조). 이 때 각 시·군·구청과 ‘보호 위탁계약’ 을 한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단체³⁷⁾에 맡겨지지만 이 가운데 주인을 찾거나³⁸⁾ 새 주인을 만나는 것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안락사시키고 있다.

민간단체에 위탁보호를 맡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데(서울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제9조 1항; 경기도유기동물보호조치조례 제7조 3항), 그 재원확보방안은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총 25개 자치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처리예산을 지원하고, 그 담당기관은 서울시 농수산유통과이다.³⁹⁾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해당 군·구청에서 유기동물의 처리를 맡고 있는데, 일선 군·구청마다 연간 200만~600만원의 자체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이 비용은 공고기간 내에 주인이 나타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

37) 대표적인 민간위탁기관인 동물자유연대(www.animals.or.kr)는 삶의 터전과 자생 능력을 잃은 동물을 돌보며 주인을 찾아주는 ‘유기동물복지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포화상태이다.

38) 유기동물에게 주인을 찾아주는 일을 하는 기관들은 경찰청이 운영하는 사이버경찰청은 유실물 안내서비스업체인 로스트114(www.lost114.com)와 공동으로 ‘애완견 분실정보 안내시스템’ 을 구축해 2001년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농수산유통과에서 동물사랑방을 운영하여 각 구청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해 실시간으로 동물 분실 및 습득 신고를 올리고 있다 (동아일보 2002. 6. 23). 인터넷 애완동물 찾기 사이트: 동물사랑방 animals.seoul.go.kr; 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 로스트114 www.lost114.com; 동물자유연대 animals.or.kr; 헬프로드 helproad.co.kr; 한국동물보호협회 koreananimals.or.kr.

39) 2004년에는 25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3억원을 신청해둔 상태이다(동물보호소설치를 위해). 서울시 각 구청의 유기동물담당부서는 지역경제과, 산업환경과 또는 환경산업과가 맡고 있다.

주의 비용으로 부담하게 하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주로 1개월 보호비로 10만원, 안락사 비용으로 3만원을 상정하고 있다.⁴⁰⁾ 경기도의 경우는 각 구·군청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¹⁾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개의 품종과 특징, 개소유주의 이름, 주소 등을 행정청에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고, 소유주의 주소가 적힌 목걸이착용의무가 강제되고 있지 않아 동물을 버린 경우 그 동물의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으나 일부러 버린 소유주를 발견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2호 위해동물 관리소홀로 범칙금 5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⁴²⁾ 개가 길을 잃은 경우 소유주가 공고를 보고 유기동물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유기동물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하고,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서울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제9조 제2항).

(3) 동물의 사체처리

최근 애완동물의 장례를 담당하는 많은 민간업체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그 비용 면에서⁴³⁾ 모든 애완동물의 소유주에게 이를 의무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에는 현재 애완동물 장례에 관한 법규정이 없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애완동물의 사체는 감염

40) 뉴시스 2003. 10. 16.

41) 의정부의 담당부서는 의정부시 농림과 축정담당이다. 광주 복구의 경우 전남대에 버림받은 유기동물을 관리해주는 광주 동물보호소를 설치하였으나 장비·예산·인력 부족으로 정상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요예산은 7천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설립당시 시에서 시설·장비 설치비 5천만원을 지원하고 매년 5개구에서 고작 300만원씩만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배정 책임을 묻는 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치료가 불가능한 애완동물 안락사 규칙제정이나 실질적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무등일보 2003. 5. 23).

42) 경범죄처벌법 제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32. (위해동물관리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경범죄처벌법시행령 별표에 의해 5만원으로 정함). 서귀포시는 2002년 방견된 9마리의 주인에 대해 각 5만원씩 4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라일보 2003. 8. 12).

43) 15만원부터 70여만원에 이르는 등 그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성 폐기물의 종류 중 조직물류로 분류되고(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의 2, 시행령 제3조의 2, 별표 1의 2), 일반 가정집에서 나온 애완견 사체는 일반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감염성폐기물인 동물의 사체는 그 동물의 주인이 요구하는 경우 그 동물의 주인에게 인도하여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이 아닌 곳으로서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중 시·도지사가 인정한 장소에 1미터 이상의 깊이로 매몰하거나 동법에 의한 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성폐기물을 인도한 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7. 지정폐기물중 감염성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그러나 환경부로의 업무 이관 당시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 부족으로 동물사체를 일반화장장에서도 소각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2002년 8월 8일까지로 제한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02년 3월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기존 시설중 한 개 화로를 ‘애완동물 전용 화장장’으로 이용하고, 관내 거주자의 경우 kg당 2천500원, 관외 거주자는 5천원의 사용료를 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행규칙 부칙에 애완동물 화장장 운영기간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유예기간인 2002년 3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로 규정하여⁴⁴⁾, 이는 월드컵기간 중 외국인에게 널리 알려진 한국이 동물학대를 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의 빈축을 사기도 했었다.⁴⁵⁾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동물의 사체에 대하여는 그나마 법규정이 있는 반면,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애완동물의 사체에 대하여는 그마저도 없는 형편이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다면 동물의 사체는 일반폐기물로서 기타 생활폐기물과 같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하는데, 이는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사랑해 온 사람들에게는 정서상 맞지 않아 도심 속 휴식공간인 야산이나 공원에 몰래 매장하는 경우도 있다.⁴⁶⁾ 이 때 일반가정에

44) 기간동안의 총 화장건수는 117마리이다(수원시연화장장폐식장 통계).

45) 동아일보 2002. 3. 12; 수원일보 2002. 3. 27.

46) 폐기물관리법 제7조 ①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

서 죽은 애완동물의 사인이 전염병일 경우 2차 전염병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는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간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화장장 자체가 혐오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동물전용화장장의 설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

5. 애완동물관련산업

애완동물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애완동물관련산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⁴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사-경매장-애견센터-소비자로 이어지는 애완동물의 유통구조에 대한 시설 기준 및 집행에 관한 것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소비자와 애견센터의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⁴⁸⁾

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이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또한 공공수역에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 제1항에 의해, 공유수면에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도 공유수면관리법 제15조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47) 2003년 8월 중소기업청 조사에서 애완동물점이 13%로 2003년 하반기 최고 인기 창업분야로 선정되었다. 애완동물 관련 산업인 펫산업의 시장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고, 관련단체의 추산은 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48) 애완견유통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미디어다음 르포 애완동물의 명암 참조(2003. 9. 30.) http://feature.media.daum.net/PrintPage/030930_dog/article/index.html.

『소비자시대』, 짐중기획, “문제있는 애완견 유통시장의 현주소”, “애완견 소비자 피해실태와 소비자 보호제도 비교” 2003. 3. 10~22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애완동물 관련 소비자상담·피해구제 건수는 2000년 2,133건, 2001년 2,578건, 2002년(1.1~11.21) 3,459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애견센터가 난립하면서 안티충무로사이트가 생기는가 하면, 애견센터의 일부 업주들이 수의사 자격도 없이 불법의료행위를 일삼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울산매일 2003. 3. 20).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반행위이나 관계 당국의 단속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2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입법예고에서는 제5조의 1을 신설하여 애완동물판매업에 관한 규제조항들을 두었다.⁴⁹⁾ 이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고, 애완동물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여야 하며 판매시 예방접종증명서를 인도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애완견 거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레몬법(Puppy lemon law)이라는 소비자보호규정과 같은 내용을 담은 법(가칭-애완견거래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자고 건의하였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2003년 8월 1일부터 “15일 이내 폐사 시 100% 교환 및 구입가 환불,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판매업소의 책임 하에 질병을 치료해 소비자에게 인도, 치료가 불가능할 때에는 동종으로 교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경부 고시) 24. 애완견판매업종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애견센터에서 모두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9) 농림부공고 제2002-101호. ①영리를 목적으로 애완동물을 판매하는 업(애완동물 번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애완동물판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애완동물판매업을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애완동물판매업을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애완동물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④애완동물판매업을 하는 자가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인도하여야 한다. ⑤그밖에 애완동물의 관리 및 판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외국의 동물관련법제분석

제 1 절 동물의 지위

1. 헌법상 동물의 지위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은 인간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실험·실습관련한 학문의 자유, 도축과 관련된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동물의 보호 및 지위와 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이 논의될 수 있겠다.⁵⁰⁾ 특기할 만한 일은 독일기본법은 1994년 신설된 제20조 a(자연적인 생활기반의 보호)규정에 2002년 7월 26일 동물보호도 포함시켜 국가기관에게 종족보호를 넘어서 윤리적인 동물 보호, 즉 개별 동물들을 고통과 상해로부터 보호해 줄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사실이다.⁵¹⁾ 이로써 동물들은 “생명체를 가진 동료(Mitgeschöpf)”로서 존중받게 된 것이나, 이것이 동물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동등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⁵²⁾

50) 독일의 2002년까지의 동물보호와 기본권의 충돌관련문제는 Kluge(Hrsg.), *Tierschutzgesetz Kommentar, Einführung RN. 85~95*, Verlag W. Kohlhammer 2002.

51) 독일기본법 제20조 a: 국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에서 자연적인 생활환경과 **동물들을** 헌법에 적합한 질서의 범위 내에서 입법, 법령에 적합한 행정과 사법을 통해 보호한다. 기존의 독일기본법 제20조 a에서는 자연적 생활환경의 보호의 개념 속에서 동물들이 자연적인 생활환경의 일부일 것을 상정하여 동물들에게 각 개체로서 헌법적인 보호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판례에서도 공공복리와 관련하여 동물보호의 위치가 논의되어왔고, 헌법적 지위를 갖지 못해 동물보호와 종교, 학문의 자유와의 충돌이 있어왔다. *Tierschutzbericht 2003* -Bericht über den Stand der Entwicklung des Tierschutzes,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5/723(26.03.2003), S. 15.

통독이후 구동독의 주(브란덴부르크, 작센, 튀링엔과 베를린)는 국가목표로서 “동물은 생명체이며 동료로서 그 습성에 맞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주헌법에 규정하였다. 그 이후 구서독지역의 주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기본법에 “und die Tiere”가 삽입되기 이전에 모두 “동물은 생명체이며 동료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였다. 따라서 2002년의 동물보호의 기본권편입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 Kluge(Hrsg.), *Tierschutzgesetz Kommentar, Einführung RN. 97~98*.

52) D. Murswiek (in: M. Sachs(Hrsg.)), Art. 20a zu GG Kommentar 3. Aufl. RN. 31b.

2. 민법상 동물의 지위

일반적으로 민법상 동물은 대개 물건에 포함되며, 동물로 인해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소유주가 저야 할 불법행위책임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뀔에 따라 물건-동물-인간 3단계로 구분하여 동물과 물건의 동격성을 부인하는 입법례가 나타나고 있다. 독일 민법은 과거 동물을 물건과 동일하게 보던 것을 1990년 8월 20일에 민법 제90조 a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특별히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다른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물건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 준용된다”고 규정하였다.⁵³⁾ 이는 동물을 감정을 가진 동료(fühlende Lebewesen und Mitgeschöpf)로서 물건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 인식의 변화된 표현이며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 또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⁵⁴⁾ 이는 독일민법 제251조 제2항 제1문이 “배상 의무자는 원상회복이 과분한 비용에 의해서만 가능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금전으로 배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인간의 밀접한 관계에 착안하여 1990년 8월 20일 “동물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용이 동물자체의 가격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에도 이는 과분한 것이 아니다”라는 제2문을 추가한 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⁵⁵⁾ 여기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치료의 성공가능성, 동물의 건강상태와 나이, 동물에 대한 애착의 강도와 동물의 시장가격 등이 기준이 될 것이다. 바덴-바덴의 지방법원에서는 100마르크의 시장가치가 있는 개의 치료비용이 5507마르크에 달한 경우에도 이것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53) 같은 내용을 오스트리아는 1988년 민법 제285조 a에 규정하였다. 스위스는 2002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국민발안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Stiftung für das Tier im Recht, 『Tier, keine Sache - Dokumentation den Nationalrat』, Zürich, den 1. August 2002.

54) Kluge(Hrsg.), Tierschutzgesetz Kommentar Einführung, RN. 120.

55) Kluge(Hrsg.), Tierschutzgesetz Kommentar, Einführung, RN. 130; 椿久美子, “ドイツのペット法事情”, 法律時報 73卷 4号, 17~18면. 이외에도 독일민사소송법 §811c에서는 영업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택 내에서 보유한 동물들은 압류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동물의 가치가 높고, 채권자가 신청을 할 경우 집행법원은 동물보호적 관점과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그 압류를 허락할 수 있다.

보았다.⁵⁶⁾ 그러나 동물의 죽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시장가격의 배상만이 인정되었다.⁵⁷⁾

우리나라의 경우도 병든 개를 판매한 사업자에게 구입 비용이외에 정신적 위자료까지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가 있다.⁵⁸⁾

3. 형법상 동물의 지위

동물을 물건과는 달리 보는 독일이라 할 지라도 형법에서는 동물들은 하나의 물건, 소유물로서 절도, 은닉, 강도, 장물취득 또는 재물손괴의 범행대상이 될 수 있고, 동물로 인한 기타의 범죄행위와 질서위반이 있을 수 있다.⁵⁹⁾ 특히 유럽 각국은 최근 위험한 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중의 위험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01년 위험한 개의 퇴치를 위한 법률(Gesetz zur Bekämpfung gefährlicher Hunde)과 함께 형법 제143조를 신설하여 위험한 개를 필수적인 허가없이 보유하거나 매매,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법을 위반한 경우나 위험한 개로 지정된 몇 가지 품종에 대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이 부과되도록 하였다.⁶⁰⁾

56) LG Baden-Baden NJW-RR 1999, 609.

57) Hirt/ Maisack/ Moritz, Tierschutzgesetz Kommentar, Einführung, RN. 44.

58) 2001년 6월 13일 서울지법 민사 8부(재판장 허만 부장판사)는 13일 애완견 센터에서 강아지를 구입한 장모씨가 “강아지가 병들어 사망한 만큼 환불과 함께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업주 김모씨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모두 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건강한 강아지를 팔 의무가 있는 만큼 강아지값 30만원 및 치료비 5만원을 줘야한다”며 “또 장씨가 강아지에게 쏟은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고려해 정신적 위자료 5만원도 지불하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2001. 6. 14).

59) Hirt/ Maisack/ Moritz, Tierschutzgesetz Kommentar, Einführung, RN. 53.

60) Tierschutzbericht 2003 -Bericht über den Stand der Entwicklung des Tierschutzes, BT Drucksache 15/723(26.03.2003), S. 17.

제 2 절 각국의 동물관련법제

동물관련법제의 시초라면 기원전 2천년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의 인간이 동물들을 지나치게 착취할 경우의 처벌을 받도록 한 것 즉 동물보호적 관점을 들 수 있다.⁶¹⁾ 근대적 의미의 동물관련법령은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 동물학대행위를 반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822년 7월 22일 로드 어스킨과 리차드 마틴에 의해 제안된 영국의 가축학대법령⁶²⁾, 미국연방 최초의 동물관련법령인 1873년의 28시간법(Twenty-Eight Hour Law)⁶³⁾에서 볼 수 있다시피 동물학대금지를 담은 단편적인 내용들이 중심이 되었다.⁶⁴⁾ 동물관련법령들도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되면서 그 내용의 중심도 옮겨져 가고 있다. 동물의 학대방지에서 동물의 생리적 보호, 더 나아가 동물의 복지를 다루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이는 동물보호법(animal protection law)의 개정과정에서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law)으로 명칭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⁶⁵⁾ 실

61) Kluge(Hrsg.), Tierschutzgesetz Kommentar, Einführung, RN. 21. 자세한 내용은 Kluge(Hrsg.), Tierschutzgesetz Kommentar, Einführung, RN. 21~25; Hirt/Maisack/Moritz, Tierschutzgesetz Kommentar, Einführung, RN. 14~15.

62) 1809년과 1821년에 법제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최초의 동물보호법에서는 말·소 따위의 대형동물에만 국한되고 개·고양이 등은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나 1835년에 모든 가축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헬무트 브라케르트, 코라판클레 펜스(최상안, 김정희 역), 『시와 그림을 통해서 본 개와 인간의 문화사』, 백의 2002, 286~287면. Martin's Act로 불리기도 하는데, 가축을 심하게 학대하는 경우 형벌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은 그 때까지도 우스개로밖에 들리지 않아 노새에게 까지도 이 적용을 확대하여야 하는 비아냥섞인 질문에 의원들이 웃어서 리차드 마틴은 이를 제대로 발표할 수 없었다. Kluge(Hrsg.), Tierschutzgesetz Kommentar, Einführung, RN. 32; Hirt/Maisack/Moritz, Tierschutzgesetz Kommentar, Einführung, RN. 2.

63) 살아있는 가축을 시장으로 운반할 때 그 수송과정에서 최소한 매 28시간마다 적절한 휴식과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64) 1835년에 모든 가축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1842년 노르웨이, 1846년에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1850년 프랑스, 1859년 이탈리아, 1860년 미국, 1867년 벨기에, 룩셈부르크, 1871년 러시아, 1889년 핀란드에서 각각 동물보호법이 발효되었다(헬무트 브라케르트, 코라판클레 펜스(최상안, 김정희 역), 『시와 그림을 통해서 본 개와 인간의 문화사』, 백의 2002, 286~287면).

65) 보호와 복지의 차이는 보호가 상대의 입장·의향 등을 고려하여 탈없이 위에서 손

정법화되지는 않았으나 사회단체는 동물을 보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차 ‘동물해방운동(movement of animal liberation)’ 또는 ‘동물권이론(animals rights)’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⁶⁶⁾

일반적으로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는 달리 애완동물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랑과 동정심에 기초하여 인간이 애완동물들과 맺은 특별한 관계로 인해 동물을 보호하고, 애완동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위생, 건강, 안전의 위험에 대한 소유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령이 있다.⁶⁷⁾

1. 영 국

(1) 동물보호법

1911년에 제정되고 일련의 수정을 거친 동물보호법(Protection of Animals Act 1911 to 1960)은 총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⁶⁸⁾, 사육 또는 포획된 동물을 모두에게 적용되며, 그들에 대한 학대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불필요한 고통이 가해지고 있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인 또는 단체에게 소추할 권한과 함께 소추여부의 판단권을 갖는 경찰에게 통보할 권한을 주고 있다. 재판소는 그 사안에 따라 5000파운드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구금을 부과하거나 이들을 병과할 수 있다. 1988년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재판소에게 동물을 학대하는 주인으로부터 당해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주고 있다.⁶⁹⁾

을 내미는 것인 반면, 복지의 상대의 인격·권리 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손을 내미는 것이다.

66) 박원순, 「‘동물권’의 전개와 한국인의 동물인식」, 『형평과 정의』 제9집 1994. 11, 324~353면; 長谷川貞之, 『アメリカのペット法事情』, 『法律時報』 73卷 4号, 14면.

67) Paige M. Tomaselli, "International Comparative Animal Cruelty Laws", Michigan State University Detroit College of Law 2003; http://www.animallaw.info/articles/art_details/print.htm.

68) 원문참조사이트 http://www.animallaw.info/nonus/statutes/statute_details/print.htm.

69) 新美育文, "イギリスのペット法事情", 『法律時報』 73卷 4号, 7면.

(2) 애완동물관련법령

그 외에도 개별법들이 다수 존재한다. 애완동물로서 판매되는 동물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애완동물영업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애완동물법(Pet Animal Act 1951, Pet Animal(Amendment) Act 1983)⁷⁰⁾, 개의 소유자에게 매년 허가를 취득할 의무를 부과하는 1959년 개허가법(Dog Licences Act 1959)과 공공도로 또는 공공의 장소에서 개가 목줄을 장착시킬 것과 목줄에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가 명시될 것을 의무화하는 개관리명령(Control of Dogs Order 1930), 공공장소에서 개의 배설물을 즉시 치우지 않은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위임하도록 한 개배설물 수거에 관한 법(Dogs(Fouling of Land)Act 1996)이 있다. 1991년에는 위험한 개법(Dangerous Dogs Act 1991)과 1997년의 그 개정법⁷¹⁾은 핏볼 테리어, 저패니즈 도사, 도로 아르헨티노, 필라 브라질리로 4종을 위험한 개로 지정하고, 특정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 그 소유 또는 관리를 금지시키고 있다.⁷²⁾

2. 미 국

(1) 동물보호법

미국에는 동물복지와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연방법이 있다. 도살의 인도적인 방법에 관한 법(Humane Methods of Slaughter Act), 1877년의 28시간법(Twenty-Eight Hour Law of 1877), 미국 동물

70) 원문은 http://www.animallaw.info/nonus/statues/statute_details/print.htm. 관련논문으로는 Alan Bates, "Detailed Legal Discussion of the Licensing and Regulation of Pet Shops", Michigan State University-Detroit Collge of Law, 2002 (http://www.animallaw.info/nonus/articles/art_details/print.htm).

71) 원문참조. 아릅폼 가족 자료실 N. 289 (<http://www.withanimal.net>) 또는 <http://www.defra.gov.uk/animalh/welfare/domestic/dogs.htm>.

72) 新美育文, "イギリスのペット法事情", 『法律時報』73卷 4号, 7면.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defra.gov.uk/animalh/welfare/domestic/> 참조.

복지법(US Animal Welfare Act, 7 U.S.C. §§2131~59)⁷³⁾이다. 이 법은 어떤 동물의 소유나 판매와 동물들에게 유지되어야 하는 생활환경 등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며, 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벌과 과태료처분을 예정하고 있다.⁷⁴⁾

이 세가지 연방법은 농장에서 식량으로 길러지는 동물이나 반려동물들의 대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반학대법(anti-cruelty statut)에 관한 것은 연방법이 아니라 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각 주에서 반학대법규들을 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받는 동물들이 애완동물 등에 한정되고, 실험동물들에는 적용되지 않아 미국에서의 반학대법률은 동물자체를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인 인간의 도덕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여지기도 한다.⁷⁵⁾

(2) 애완동물관련법령

미국의 연방동물보호법은 야생동물, 이국적인 동물의 판매와 전시 그리고 애완동물의 도매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애완동물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는 오히려 지방(주나 시)의 반학대법, 지방동물규정 또는 공공건강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⁷⁶⁾ 각 주법에서 동물관련법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 오레건 주의 예를 들면, ORS Chapter 609(동물통제; 이국적인 동물들; 판매업자)에서 개, 이국적인 동물들, 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것, 동물판매상, 잡칙,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 개의 등록 및 마이크로칩, 위험한 개의 판단기준, 개의 공공장소에서의 자유로운 활보금지,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경우들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는 경범죄로 250달러에서부터 500달

73) 원문은 <http://www.animallaw.info/statutes/stusawa.htm>, Chapter 54. Transportaion, sale, and handling of certain animals.

74) 판매자와 전시자의 면허제, 면허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 개나 고양이가 판매자나 전시자에 의해 처분되어야 하는 기간, 동물의 인식표, 상업용으로 동물을 운반할 경우의 인도적 기준, 동물싸움금지규정, 애완동물의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75) Paige M. Tomaselli, "International Comparative Animal Cruelty Laws", Michigan State University Detroit College of Law 2003; http://www.animallaw.info/articles/art_details/print.htm.

76) <http://www.nal.usd.gov/awic/companionanimals/faq.htm>.

러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의 통제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⁷⁷⁾

그 밖에도 소비자를 악질의 판매자로부터 어떻게 보호해야하는가와 관련하여 애완견보호법(Puppy Protection Act)이 1992년 연방의회에 제출되었으나 보류되었고⁷⁸⁾, 현재에는 각주가 제정하는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등에서 애완동물의 매매에 관한 조항을 만들어 악질판매자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⁷⁹⁾

3. 독 일

(1) 동물보호법

독일 동물관련법령의 기본법인 동물보호법(Tierschutzgesetz)은 1933년 11월 14일에 제정된 제국동물보호법⁸⁰⁾을 기초로 하여 1972년 7월 24일 동물보호법(BGBI I. 1277)이 대폭 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⁸¹⁾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동물보호법의

77) Oregon 주의 Douglas County에서는 Teile 6에서 개통제, 위험한 개, 동물보호소 등을 규정하고 있고, Clackamas County에서는 Teile 5 Animal, 5.01 개의 허가과 통제부분에서 목적, 정의, 허가, 개의 통제, 감금, 무는 개, 벌칙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http://www.co.clackamas.or.us/dc/laws.htm>).

78) 법률안은 원래가 애완동물판매점이나 상업시설을 목표로 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로써 취미인 소유자에게 충격을 주게 되어 폐안이 되었다.

79) 長谷川貞之, 「アメリカのペット法事情」, 『法律時報』 73卷 4号, 11~12면; Tracy Vogel, Staff Writer, 「Pet Lemon Laws」 <http://www.vetcentric.com/magazine/magazineArticle.cfm?ArticleID=1380>.

80) 이 법 이전에는 형법 제145b조 (1933. 5. 26)에서 동물을 무자비한 학대나 고의적으로 학대하는 것에 대하여 형벌을 내린다고 규정하였으나 이 법으로 인해 형법에서 동물보호규정을 분리해냈다. 이 법이 나찌시대에 만들어진 것은 나찌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북유럽에 퍼져있던 동물보호사상과의 연계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미 1927년부터 제국의회에서 여러 번 독자적인 동물보호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었다. Hirt/Maisack/ Moritz, Tierschutzgesetz Kommentar, Einführung, RN. 3.

81) 독일 동물보호법(Tierschutzgesetz)의 번역문으로는 천병호(역), 해외입법 「동물보호법」, 입법조사월보 230(1994. 6), 176~192면이 있다. 그러나 번역문은 이후 1998년과 2002년의 개정으로 추가된 몇 조문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총 13장으로 제1장 기본원칙, 제2장 동물의 소유, 제3장 동물의 도살, 제4장 동물의 수술, 제5장 동물실험, 제6장 기초교육, 보습교육 또는 발전교육을 위한 수술과 조치, 제7장 재

목적조항인 제1조의 변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972년의 동물보호법은 “이 법률은 동물의 생명 내지 건재를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고, 어느 누구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통이나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에 국한한 반면, 1986년 개정에서는 인간이 동물을 “같이 살아가는 동료 (companion)”로서 그들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해야할 책임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2) 애완동물관련법령

애완동물관련법으로는 동물보호법 제2조를 개의 보유와 관련하여 구체화한 2001년 5월 2일에 개정되고 동년 9월 1일부터 발효된 개에 관한 동물보호명령(Tierschutz-Hundeverordnung)⁸²⁾과 위험한 개의 퇴치를 위한 법률(Gesetz zur Bekämpfung gefährlicher Hunde)을 들 수 있다. 개에 관한 동물보호명령은 동물보호의 측면에서 모든 개에게 적용되며, 동물이 머물 장소의 필요, 사료 및 보살핌, 귀나 꼬리를 자른 개의 전시, 한 사람이 기를 수 있는 개의 마리수 제한, 사육자의 지식과 능력에 대한 요구조건들 및 특별히 공격적인 개의 품종⁸³⁾간의 교배 및 사육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위험한 개-투견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들은 공적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경찰·질서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데, 연방행정부는 2001년 4월 12일 위험한 개의 퇴치를 위한 법률(BGBI. I S. 530)을 통해 이러한 보완장치를 추가하였다.⁸⁴⁾

주법에서는 개에 관한 동물보호명령을 구체화하여 각 주는 위험한 개의 보유에 관하여 구체화된 개보유법(Gesetz zur Halten von Hunde,

료, 생산물 또는 장기의 생성·획득·보관 또는 증가를 위한 수술이나 처리, 제8장 동물의 사육과 동물의 거래, 제9장 운송, 거래 및 소유의 금지, 제10장 동물보호를 위한 기타사항, 제11장 법률의 집행, 제12장 형벌 및 벌금규정, 제13장 경과 및 종결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82) BGBI I S. 838~841(2001), Hirt/Maisack/Moritz, Tierschutzgesetz Kommentar, Einführung, RN. 6.

83) 핏볼테리어, 불테리어, 스탠포츠웨어-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탠포드웨어-테리어

84) BT Drucksache 15/723, S. 35.

Hundehaltungsverordnung)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개등록세 등을 정한 지방세법관련조례(Hundesteuersatzung), 공공장소에서의 개를 데리고 다닐 경우의 수칙 등을 공원관리조례, 놀이터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4. 일 본

(1)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본의 경우는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화 48년)을 2000년(평성 11년) 12월 1일에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발표시켰다. 과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노력의무규정에 그치고 있으나, 신법은 ‘애호’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애완동물을 대상으로 함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신법 제2조는 “동물이 생명이 있는 것이란 점을 감안해서 누구도 동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또는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공생을 배려하면서, 그 습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⁸⁵⁾

(2) 애완동물관련법령

애완동물관련법령은 아니지만 의미있는 지침으로써 가정동물 등의 사육 내지 보관에 관한 기준(평성 14년 개정공포)을 공포하여 가정동물들의 소유자가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가정동물의 소유자가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명찰, 마이크로칩을 시술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가정동물이 공원, 도로 등 공공의 장소 내지 타인의

85) 青木人志, 『動物の比較法文化- 動物保護法の日歐比較』, 有斐閣, 2002, 211면 이하. 신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동물의 적정한 사육 및 보관(적정한 동물사육을 위한 주인의 책임, 동물취급업자의 규제, 동물살상죄, 학대죄, 유기죄의 확대와 처벌의 강화, 동물애호담당직원, 동물애호추진원, 협의회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제3장은 도도부현등의 조치, 제4장 잡칙, 제5장 벌칙으로 총 5장 31조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를 훼손하거나 털, 배설물 등으로 오염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 애완동물의 보유 수를 적절한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로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 번식제한, 동물로 기인하는 감염성의 질병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것, 개의 사육에 관한 기준 등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⁸⁶⁾

일본의 경우는 광견병예방법(평성 11년 7월 6일 개정⁸⁷⁾의 주대상을 개로 지정하여, 개의 등록신고 및 명찰착용,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년에 한번씩의 광견병접종의무, 개의 소유주가 신고 및 접종의무를 위반한 경우, 명찰과 예방접종표를 패용시키지 않은 경우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⁸⁸⁾,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광견병예방법시행세칙을 두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외에도 동물보호및관리에 관한 조례, 동물화장장설치에 관한 조례, 개의 배설물방지조례 등을 가지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5. 오스트레일리아

(1) 동물보호법

오스트레일리아는 8개의 행정지역⁸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지역별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인 캔버라가 있는 수도특별구(Australia Capital Territory: ACT)의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1992)⁹⁰⁾, 퀸즈랜드의 동물보호법(Animal care and protection act 2001)⁹¹⁾ 등이 있다.

86) 원문 <http://jorei.cne.jp/law/katei.html>. 번역문은 부록에 첨부하였음.

87) 원문은 http://jorei.cne.jp/law/kyouken_h11.html.

88) 제4조: 개의 소유자는 개를 취득한 날(생후 90일 이내의 강아지를 취득한 경우는 90일이 지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생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장에게 개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읍면장은 원부에 이를 등록하고, 그 개의 소유자에게 개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개의 소유자는 이를 개에게 착용시켜야 한다. 제23조: 등록절차비용과 예방주사비용은 개의 소유주가 부담한다.

89) Victoria, Capital Territory, New South Wales, Queensland, Northern Territory, Western Australia, South Australia, Tasmania.

90) 원문자료는 <http://www.legislation.act.gov.au>. 최종 개정은 2001년 9월 12일이며 2002년부터는 전면개정작업에 들어갔다.

91) 원문은 <http://www.qld.gov.au>의 legislation 편에서 참조.

(2) 애완동물관련법령

ACT에는 과거 1975년에 개통제법(Dog Control Act)을 제정하였으나, 2000년 가내동물법(the Domestic Animals Act 2000)을 제정함으로써 개통제법은 폐지되었다. 동물보호법과 가내동물법 가운데 개와 고양이에 관한 내용들을 모아 개와 고양이에 관한 법(Dog & Cat Law)이라고 부르고 있다.⁹²⁾ 그 외에도 책임있는 개 보유를 위한 헌장(Charter for responsible dog ownership)을 제정하여 개 소유주의 자신의 개를 보호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퀸스랜드의 수도인 브리즈번(Brisbane)시에서는 2003년 고양이, 개, 새, 경주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동물법(The Animal Local Law)을 제정하였는데 개와 관련하여 공공장소의 배설물제거의무⁹³⁾, 등록, 개입장가능지역, 금지되는 개의 품종 등을 규정하고 있다.⁹⁴⁾

6. 뉴질랜드

(1) 동물보호법

현재 뉴질랜드의 동물보호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내용의 법들이 있어왔다. 영국의 가축학대방지법이 영국의 이주민과 함께 전래되어 1840년 뉴질랜드 법령에 일부가 사용되었고, 1879년에는 야생동물과 가내동물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동물학대법이 생겼으나, 이후 1884년 경찰범죄법(Police Offences Act)에 의하여 동물학대법이 폐지되었다. 이 법은 동물학대조사관에게 특별경찰로서의 권한이 주어졌고, 학대가 고의적일

92) 아람폼 가족자료실, No. 141, <http://www.withanimal.net>.

93) 반드시 개의 배설물을 치울 봉투나 용기를 가지고 다녀야하며,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 150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를 벌금을 내야하는데, 2004년 9월 1일부터는 배설물을 치울 봉투나 용기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도 37.50 오스트레일리아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http://www.brisbane.qld.gov.au/residential_services/animals/local_law.shtml).

94) http://www.brisbane.qld.gov.au/residential_services/animals/dogs/index.html).

뿐만 아니라 방치에 의한 것일 경우에도 범죄행위로 간주되었다. 1960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점진적인 개정을 거쳐오다가 1990년 동물복지 자문위원회(AWAC:the Animal Welfare Advisory Committee)⁹⁵⁾에 의해 전면 검토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 1월부터 동물복지법 1999(the Animal Welfare Act 1999)이 시행되었다.⁹⁶⁾ 이 법은 동물소유주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였고, 자세한 내용들은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위법령(Code)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법은 동물의 보살핌에 대한 의무, 법의 적용대상인 동물의 종류, 외과적 시술, 동물수출, 실험·실습·교육과 관련된 동물인식, 처벌, 야생동물, 복지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애완동물관련법령

뉴질랜드에는 개관리법 1996(Dog Control Act 1996)이 존재한다. 이 법은 개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개의 등록요건을 정하고, 위험한 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만들고, 사람이나 가축에게 개가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개의 소유주의 의무와 개로 인해 발생한 위험에 관한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개 소유주는 자신의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되며, 위반에 따른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개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정부법(the Local Government Act 197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특정된 공공장소에의 개의 출입금지, 개운동구역의 설정, 배설물즉시제거의 의무, 이름표부착의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 밖에 1992년 8월에 시행된 반려동물판매에 있어서의 권고와 최소기준에 관한 법(Code

95) AWAC 위원회에는 농업 관련산업 관계자, 동물복지활동가, 수의학과전문의, 동물심리학자, 소비자보호단체, 동물복지법 전문가, 그리고 뉴질랜드 농수산부, 동물윤리 자문위원회의 총회장과 각 지부의 협회장들이 그 구성원이며 뉴질랜드 농수산부 장관에게 동물복지에 관한 것을 자문하여 주는 위원회로 1989년 설립되었다. 아름품 가족자료실 No. 300.

96) 아름품 가족 자료실, No. 300, <http://www.withanimal.net>. 뉴질랜드 1999년 동물복지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maf.govt.nz/biosecurity/legislation/animal-welfare-act/index.htm> 참조.

of Recommendations and Minimum Standards for the Sale of Companion Animals), 1997년 11월에 시행된 개의 복지를 위한 권고와 최소기준에 관한 법(Code of Recommendations and Minimum Standards for the Welfare of Dogs)을 들 수 있다.

제 4 장 애완견사육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그 법적 해결방안

점점 많은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 밀집해 살게 되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자유롭게 방해받지 않고 수행하고 싶어한다. 좁은 녹지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 산책자,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있을 경우에, 상호배려, 인내, 책임감이 있어야만 공동생활이 유지된다. 이 때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생활의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만 하는데 자기 소유의 개의 배설물을 치우고, 목줄을 매어 데리고 다니는 이성에 근거한 상호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에티켓에 의존함은 그 실효성확보에 무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여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애완견사육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들에 대한 외국과 우리나라의 해결책과 그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개가 물어서 발생한 부상·사망사고

개로 인해 인명사고나 재물손괴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종종 개의 소유자나 보유자, 잠재적인 피해자가 종종 개의 행동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거나, 개를 사육하는데 있어서 책임성이 없이 우리 사회의 요구와 필요성에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교육시키지 못한 데 있다.

개에게 물리거나 개에게 할퀴를 당하는 경우 가벼운 외상에서부터 심각한 상해, 더 나아가 죽음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가 잘 파악되지는 않으나 발생함에는 틀림이 없다. 이러한 사고의 통계를 정확히 내기는 어렵지만 스위스 학자인 Matter의 보고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미국의 경우는 129명⁹⁷⁾, 뉴질랜드의 경우는 175명에 달하고, 스위스의 경우는 192명이 사소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었는데, 그 중 피해자가 아이들인 경우가 60%였고, 주로 머리와 목을 물렸다.

97) 미국에서는 개에게 물리는 일이 전염병 감염의 한 요인으로 등장해서 해마다 전체 미국인의 1% 이상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동물 감염 질병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여 매년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임스 서펠(윤영애 옮김), 『동물, 인간의 동반자』, 들녘 코기토, 2003, 35~36면.

약 82%는 아는 개에게 물렸고,⁹⁸⁾ 심각한 상해와 죽음에 이르게 한 대부분의 개(80~90%)는 크고, 수컷이고 거세되지 않은 상태였다.⁹⁹⁾

각국에서는 공공의 복지와 안녕질서를 위해 경찰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사람이나 가축을 해할 수 있는 위험한 개를 통제하고자 입법부나 지방의회에서 법률과 조례로써 그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 내용은 주로 특정한 개의 품종(Kampfhunde, dangerous dog)을 열거하거나, 개의 크기, 사람을 문 전력(vicious dog)등을 고려하여 위험한 개로 선언하고, 이를 사육하는 것을 제한하고, 위험한 개를 키울 경우의 강화된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 미 국

(1) 위험한 개의 판단기준

미국은 위험한 개(dangerous dog) 또는 가해력이 있는 개(vicious dog)에 대하여 주법률이나 조례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 대개 위험한 개로 주로 핏불¹⁰⁰⁾, 핏불테리어, 스태포드셔어 테리어 등이 거론되지만, 현재는 품종별로 나누지 않고 위험한 개, 잠재적인 위험한 개, 가해력이 있는 개 등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 그 정의도 동일하지 않다.¹⁰¹⁾

오레곤 주 더글라스 카운티 조례를 살펴보면 제6편 동물에서, Chapter 6.04에서 개의 통제를 다루고, Chapter 6.08에서는 위험한 개

98) Matter, Hans C., Epidemiologie von Biss- und Kratzverletzungen durch Wirbeltiere in der Schweiz: Angaben über Hundebisse(ohne Rassenangaben), 1998.

99) Arbeitsgruppe Gefährliche Hunde AGGH, "Gefährliche Hunde sinnvolle und zielgerichtete Massnahmen", 1999, S. 2. http://www.bvet.admin.ch/tier-schutz/d/berichte_publicationen/heimtiere/kampfhunde/aggh_gef_hde.pdf.

100) 長谷川貞之, アメリカのペット法事情, 法律時報, 73卷 4号, 12면. 과거 미국에서도 사람에게 대한 심각한 공격의 빈번함을 이유로 핏불에 대한 규제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적법절차조항과 동물보호라는 점을 조화시켜야 하는 부담으로 현재는 특정종에 대한 금지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Lynn Marmer, The New Breed of municipal dog control Laws: Are they constitutional?, <http://www.idir.net/~wolf2dog/review.htm>.

101) Lynn Marmer, The New Breed of municipal dog control laws: are they constitutional?, <http://www.idir.net/~wolf2dog/review.htm>.

(dangerous dog)와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potentially dangerous dog)를 분리하고 있다. 위험한 개는 사람을 물어서 심각한 상해를 입혔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거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다른 가내동물을 죽였거나, 소유주의 물리적 통제를 벗어나서 다른 가내동물을 죽였을 경우, 공격적으로 무는 성향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상해로 인해 잠재적인 위험한 개로 판단되어 주인에게 통지되었으나 또 다시 반복해서 공격적으로 물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가한 개를 말한다.¹⁰²⁾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로 판명되는 개는 신체적인 상해를 입혔거나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 또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이나 가내동물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혹은 주인의 소유지 외에서 목줄 등에 안전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나 가내동물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자동차안에서 목줄은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물어 신체적 상해를 가했거나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이나 가내동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하게 한 경우의 개를 말한다.¹⁰³⁾

버어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의 경우, 위험한 개(dangerous dog)와 가해벽이 있는 개(vicious dog)을 구별하는데, 위험한 개는 물거나 공격함으로써 사람이나 애완동물에게 상해를 가한 개를 말한다. 가해벽이 있는 개는 사람을 죽였거나, 여러 번 물었을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손상 또는 신체기능의 심각한 손상과 같이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 경우, 이미 이전에 법원에 의해 위험한 개로 판명되어 소유주에게 고지되었는데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해서 나타낼 경우를 말한다.¹⁰⁴⁾

(2) 사람이나 가축을 문 개의 소유주의 책임과 의무

1) 오레건 주법의 규정

오레건 주법에 의하면는 개에 의해 가축(livestock)이 상해를 입거나 죽었을 경우에 개의 소유주는 그 피해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102) Douglas County Ordinance (Oregon), 6.08.020(B)

103) Douglas County Ordinance (Oregon), 6.08.020(A).

104) Arlington County Code of Ordinances(Virginia), Chapter 2 Animals and Fowl §2-10 (a).

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¹⁰⁵⁾ 오레건 주 더글라스 카운티는 현장에서 위험한 개로 판명될 경우 감금한 후 수의사가 안락사를 시키고, 개의 소유주는 그 증명서를 관청에 전달해야 한다.¹⁰⁶⁾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로 판정받은 개의 경우 개의 소유주가 개를 물리적으로 제한하여 타인의 소유지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공공도로, 보도에 뛰어드는 것을 막아야 하고, 항상 목줄을 단단히 매고, 표식을 붙이고 다녀야 하며, 해마다 개등록세 외에 25달러씩을 더 내야 한다.¹⁰⁷⁾ 정선 시의 경우 사람을 두 번 문 개는 누구도 그 개를 보유할 수 없다.

2) 개 소유주의 손해배상책임

개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 개 소유주의 책임과 관련하여 미국은 주에 따라 one(first)-bite-rule 이나 dog-bite-rule을 선택하고 있다. one-bite-rule은 초기 common law에서 모든 개는 한번은 물 수 있다는 견해에 근거하여 개가 첫 번째로 문 경우에는 소유주가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미 한번이라도 부상·사망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는 개(vicious dog)¹⁰⁸⁾라는 사실을 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다시 가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를 일으킨 개의 소유주가 자신이 이에 대해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¹⁰⁹⁾ 뉴욕주 등 22개 주가 이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때 피해자가 개를 흥분시켰거나 개의 소유주에 대한 공격여부 등의 사고발생원인과 주인이 가해를 한 개의 성벽을 알았는가 여부가 주인의 책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된다.¹¹⁰⁾

105) ORS 609.140 (1).

106) Douglas County, Oregon, 6.08.090.

107) Douglas County Ordinance (Oregon), 6.08.080. 버지니아 주 Arlington의 경우는 chapter 2-10 (d) 위험한 개로 등록한 뒤 해마다 5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이를 표시한 목걸이는 항상 착용해야 한다.

108) 개에게 물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주인, 개에게 물린 사람, 의사, 수의사 등은 즉시 행정청에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개와 형태와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신고하여야만 한다.

109) Lynn Marmer, The new Breed of municipal dog control laws: are they constitutional?, Cincinnati Law Review, <http://www.idir.net/~wolf2dog/review.htm>. S. 3.

110) 조지아주법 OCGA §51-2-7: 어떠한 종류이건 간에 잔인하거나 위험한 동물을 소유하거나 기르는 사람은 부주의한 관리나 그 동물이 자유로이 다니도록 허용한 것

이와는 달리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인 dog-bite statute를 채택한 주가 있다. 이는 가해를 한 개의 소유자는 개의 가해에 의해서 발생한 사람이나 가족에의 손해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등 28개 주와 콜롬비아 지구가 이를 채용하고 있다. 이 때 소유주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주인이 가해를 한 개의 사육·관리에 관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나 자신이 기르는 개가 타인을 상해하였는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¹¹¹⁾

2. 독 일

(1) 위험한 개의 판단기준

2000년 독일에서 위험한 개들에 의해 발생한 심각한 공격건수가 증가하자 2001년 4월 21일 위험한 개의 퇴치에 관한 법률(Gesetz zur Bekämpfung gefährlicher Hunde)이 발효되어 위험한 개의 수입과 보유를 금지하고, 이 법 위반시에는 개를 압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험한 개로 판단하는 기준은 미국처럼 전력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특정 품종들을 지정하고 있다. 핏불-테리어, 어메리칸 스태포드셔어-테리어, 스태포드셔어-불테리어와 불테리어의 4종류의 개가 위험한 품종으로 규정되었고, 이를 구체화한 각 주의 개보유법에서 그 품종을 추가할 수도 있다.¹¹²⁾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개보유법(Hundegesetz

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에 의해 사고를 유발시키지 않은 타인에게 상해를 유발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잔인한 성향을 입증하는 것은 그 동물이 시, 주 혹은 연방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복종되도록 가족근에 묶이도록 요구되었었고 동물이 사건 당시에 감독자의 복종 하에 있지 않았거나 가족근에 묶여있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이는 수탉을 포함하여 가내 가금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11) 長谷川貞之, アメリカのペット法事情, 法律時報 73卷 4号, 13면.

112) 2000년 6월 30일 라인란트-팔츠 주에서는 위험방지명령에서 위험한 개의 품종에 지정된 개를 보유한 자가 이 품종의 모든 개가 위험한 개는 아니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이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며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며 이를 기각하였다. VGH B 12/00, VGH B 18/00, VGH B 8/01, <http://www.vrp.de/ar->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¹¹³⁾은 제3조에서 위의 4품종 외에도 위 4품종과 다른 품종과의 교배로 태어난 개(제2항)와, 공격성강화 또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키워진 개, 공격을 받지 않고도 사람을 물었거나 위협을 주며 사람에게 뛰어올라왔거나¹¹⁴⁾, 다른 개를 문 경우(제3항)에는 위험한 개로 보고 있다. 그 밖에도 위험한 개에 준하는 개 소유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10조는 “특별한 품종의 개(Hunde bestimmter Rassen)”로서 아라노, 어메리칸 불독, 불마스티프, 도고 아르젠티노, 필라 브라질레이로, 마스티프, 마스티노 에스파뇰, 마스티노 나폴리타노, 로트바일러, 도사이누 및 그 품종과 교배된 개를 들고, 동법 제11조는 어깨높이 40 cm 이상 또는 몸무게 20 kg이 넘는 “큰 개(Große Hunde)”¹¹⁵⁾의 소유주는 위험한 개의 소유주가 지켜야 할 의무에 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 소위 “위험한 개”의 소유주의 책임과 의무

1) 위험한 개의 보유에 관한 허가신청요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 위험한 개를 소유하려면 해당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은 소유주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체적으로도 개를 안전하게 줄에 묶어 보유하고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일 것, 위험한 개에 대한 필요한 전문지식과 신뢰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¹¹⁶⁾ 그 밖에도 개를 교육, 길들이기, 보유

chiv/rechtspr/2001/r0100446.htm.

113) 번역문은 부록에 수록되었음.

114) 사람이나 가축을 문 경우에는 수의사의 감정서를 받아야 하고, 만약 개꼬리를 밟아 반사적으로 문 것에 불과하다면 개의 소유주는 위험한 개로 판정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수의사에게 다시 감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Verwaltungsvorschriften zum Landeshundegesetz (NRW), S. 6. <http://www.munlv.nrw.de/site-s/arbeitsbereiche/verbraucherschutz/hunde>.

115) 주로 도베르만 또는 셰퍼훅드. 바이에른 주의 경우는 어깨높이 50cm 이상인 개-셰퍼훅드, 복서, 도베르만, 로트바일러, 도이체 도게 등.

116) 전문성은 공인된 전문가 또는 공인된 전문시설로부터 판단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인정절차와 내용 및 시험의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이미 전문성이 있어 전문성인증증서가 필요 없는 자는 수의사, 사냥허가증이 있거나 개의 사육, 매매 등의 허가를 보유한 자, 경찰인도전책임자 등

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 설비 및 자유공간을 확보하고, 탈출이 불가능하고 행동이 자유로운 머무를 곳을 확보할 것¹¹⁷⁾, 개로 인해 발생한 인명 및 재물손괴의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¹¹⁸⁾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조할 수 없는 인식표(주로 마이크로칩을 이용한다)를 해 줄 것이 요구된다(제4조 제1항). 다른 주의 개보유법도 동일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¹¹⁹⁾

2) 신고의무

허가를 받고 난 뒤 위험한 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¹²⁰⁾ 소유자의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험한 개를 취득하는 자에게 이 개가 위험한 개로 다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제8조 제1항, 제2항).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질서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제20조 제1항 제13호).¹²¹⁾

3) 안전하게 데리고 다녀야 할 의무¹²²⁾

주인의 뜻에 반하여 밖으로 나가도록 해서는 안되고,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과 같은 울타리있는 사유지의 외부와 공동주택의 통로에서 위험한 개는 위

이다. 신뢰성의 문제는 소유주의 범죄경력여부, 알코올 및 마약중독여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된다(제6조, 제7조).

117) 이에 대해서는 해당관청이나 수사관청의 공무원은 해당지역을 들어가 검사할 수 있고, 개의 소유주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118) 인명사고의 경우 최소보장액이 500.000유로, 재물손괴의 경우 최소보장액이 250.000유로에 달하는 책임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다(제5조 제5항). 니더작센 NHundG §10.

119) Stadt Bremen, Gesetz über das halten von Hunden §1 Gefährliche Hunde (6).

120) 위험한 개의 보유허가조건을 갖춘 자에게만 양도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50유로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퀵른시).

121) 개보유법위반의 경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는 과태료로 100,000유로까지 부과할 수 있고, 니더작센 주는 10,000유로까지 부과할 수 있다.

122) 위험한 개가 아닌 개에 대해서도 개의 소유주는 개를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사육하고 감독해야만 하고, 위험예방을 위해 다음의 지역에서는 적정한 줄에 묶어서 데리고 다녀야 한다. 1. 보도, 상업영역, 도심, 군중이 많이 다니는 도로와 지역, 2.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울타리가 없는 공원, 정원, 녹지지역과 특히 예외적으로 개가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지역이 지정된 어린이 놀이터, 3. 공공집회, 엘리베이터, 축제와 그 밖에 공공건물, 학교, 유치원에서 이루어진 군중들이 모이는 행사(제2조 제1항, 제2항).

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줄에 묶어 데리고 다녀야 한다.¹²³⁾ 위험한 개가 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입마개를 하거나 그와 같은 효과를 내는 장치를 하고 다녀야 한다(제5조 제1항, 제2항).¹²⁴⁾ 이에 대한 예외로서 개의 복종여부와 사회적 적응력을 시험하는 행동시험(Verhaltensstest, Wesenstest, Begleithundeprüfung)에 합격한 경우, 맹인견, 경찰견, 양치기견, 구조견 등과 생후 6개월 미만의 개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험한 개를 데리고 다닐 경우에는 개보유허가증이나 그 사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한 개를 여러 마리를 동시에 한사람이 데리고 다녀서도 안 된다(동조 제4항)¹²⁵⁾. 이러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4) 사람이나 가축을 문 개 소유주의 손해배상책임

독일 민법 제833조, 제834조는 “개가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개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가 일반적 주의의무를 다하였거나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입증책임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3. 오스트레일리아

(1) 위험한 개

오스트레일리아 수도권특별구(Australian capital territory)의 가내동물법 2000(Domestic Animals Act)에 의하면 경비견으로 교육을 받았거나 다른 지역에서 경비를 위한 경비견으로서 보유된 개는 위험한 개로 기록하여야 하고,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했거나 괴롭힌 적

123) 최대한 1.5m의 길이여야 하고, 입마개규정과 목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유로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http://www.stadt-koeln.de>, Haltungserlaubnis für einen Hund bestimmter Rassen.

124) Stadt Bremen, Gesetz über das Halten von Hunden §2 Führen gefährlicher Hunde in der Öffentlichkeit (2).

125) 쾰른시의 경우 이를 위반한 때에는 20유로의 범칙금에 처한다.

이 있을 경우 위험한 개로 선언할 수 있다.¹²⁶⁾ 오스트레일리아의 퀸즈랜드의 브리즈번 시는 어메리칸 핏볼테리어, 도고 아르헨티노, 필라 브라질 레이로, 저패니즈 도사 품종의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¹²⁷⁾

(2) 위험한 개의 소유주의 책임과 의무

위험한 개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개의 보유에 관한 허가증(dangerous dog licence)을 받아야 한다. 위험한 개의 보호자(carer)는 상당한 이유없이 공공장소에 위험한 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고 데리고 나와서는 안 되고, 위험한 개의 소유주(keeper)는 상당한 이유없이 주인이나 개에 대하여 책임질 사람없이 공공장소에 있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¹²⁸⁾ 또한 위험한 개를 키우는 집에서는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고표시를 문에 붙여야 한다.¹²⁹⁾

개를 돌보는 사람없이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괴롭힐 경우에 개의 소유주가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며 최고 50점의 벌점을 받게 되고, 만약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괴롭히는데 개의 소유주의 위법이 있다고 여겨질 경우 법원은 그 사건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에게 殺처분을 내리거나,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어 법원이 찬성할 경우에는 개를 위험한 개로 선언하고, 개와 소유주에게 개의 사회화훈련과정을 이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¹³⁰⁾ 개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개의 공격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면 개의 주인은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¹³¹⁾

4. 뉴질랜드

(1) 위험한 개

뉴질랜드의 개통제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개가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사람이나 동물에게 돌진하거나 깜짝

126) ACT Domestic Animals Law 2000, 22 (1), (2).

127) http://www.brisbane.qld.gov.au/residential_services/animals/dogs/index.shtml.

128) ACT Domestic Animals Law 2000, 24(1), 27 (1), (2).

129) ACT Domestic Animals Law 2000, 28 (2).

130) ACT Domestic Animals Law 2000, 50 (2), (4).

131) ACT Domestic Animals Law 2000, 55 (1), (2).

놀라게 할 때, 사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차량에 돌진한 경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우에 개의 공격적인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에 근거하여 사람이거나 가축, 가금류, 가내동물이나 보호받는 야생동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믿어지는 합리적 이유를 갖는 개를 위험한 개로 인정한다. 이렇게 위험한 개로 분류된 경우, 관할당국은 즉시 그 소유주에게 공식문서로서 통지해야 하고, 이에 대해 개의 소유주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¹³²⁾

(2) 위험한 개의 소유주의 책임과 의무

위험한 개로 통지된 후로부터 한달 이내에 개가 소유주의 안전하게 율타리 쳐진 구역에 가두어졌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불임수술증명서를 관할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험한 개로 판명된 개는 차량이나 우리안이나 아닌 경우 무는 것을 막기 위해 숨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재갈이나 그와 비슷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는 개가 자유롭게 공공장소나 사유지에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해마다 일반 개의 등록비의 150%에 해당하는 개감독비용을 내야하고, 관할당국의 서면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없다.¹³³⁾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500 뉴질랜드 달러를 넘지 않는 벌금 하에서 약식재판에 처해진다.

5.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위해정보수집시스템에 접수된 애완동물(대부분이 개)에 의한 위해사고는 총 157건으로 2001~2002년 104건, 2003년 1~5월말까지 53건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¹³⁴⁾

132) Dog Control Act 1996 (New Zealand), 31.

133) Dog Control Act 1996 (New Zealand), 32 (1).

134) 157건 중 다른 사람 소유의 낯선 애완동물에 의한 사고가 41.4%(65건)로 가장 많았으나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애완동물에 의한 사고도 29.3%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는 전체 157건 중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64건(40.8%), 65세 이상 노인이 9건(5.7%)으로 피해자의 46.5%(73건)가 면역성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였다. 최근 1년간 발생한 사고 72건에 대하여 애완동물에 대한 광견병 등 예방접종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예방접종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전체 72건 중 19건(26.4%)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최근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 사실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완동물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면 위험해

우리나라의 경우 개의 품종, 크기, 가해력 등을 고려하여 개의 소유자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를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2호), 개를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한 사람(동법 동조 제33호)은 경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짓지 않았더라도 대형견, 난폭견 등이 주인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경우에는 인근 파출소 및 소방서 119 구조대에 신고하거나 도구를 사용해 맹견을 직접 처리할 수 있고,¹³⁵⁾ 이를 직접 처리하더라도 동물보호법 제11조 제5항 사람의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일단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광견병검사를 한 뒤¹³⁶⁾ 사소한 상처일 경우 신고접수가 잘 되지 않고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지만, 심각한 상해 또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 개의 소유주는 동물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¹³⁷⁾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긴급 체포되며 그 개는 도살된다.¹³⁸⁾

요!”, 『소비자시대』, 2003. 8. 26~27면.

135) <http://sihe.seoul.go.kr/STAR/chuk23.htm>.

136) 광견병예방접종을 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37)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 7단독 오기두 판사는 2002년 11월 1일 김모씨 부부가 집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동물의 주인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동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2001년 4월 김씨가 이씨의 집 2층 현관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 달려드는 개를 피해 난간으로 뛰어내렸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뒤 ‘세입자에 해를 줄 수 있는 개를 치워달라’는 요구가 무시되자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와 또 다른 세입자가 개를 치워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개 때문에 불편하면 이사를 가라’며 무시한 피고는 원고부부에게 치료비와 수입 800여만원 외에 500만원의 위자료도 함께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스포츠서울 2002. 11. 1).

138) 2003년 3월 19일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식당 앞도로에서 컴퓨터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모(9.광주 북구 풍향동)군이 이 식당에서 키우는 1년생 진돗개에 머리와 귀 등을 물려 조선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2003.3.20, 연합뉴스).

1년6개월된 진돗개가 지난 4일 오후 5시30분께 경남 함안군 대산면 이씨의 집 마당에

제 2 절 공원 및 공공장소에의 입장제한

동물보호법상 개들에게 적당한 운동을 보장해주어야 하므로¹³⁹⁾, 개의 입장을 무조건 금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개들의 배설물이나 공격가능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불편함이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개들의 입장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지역과, 허용되더라도 목줄 및 배설물을 치우는 도구 등을 지참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1. 미 국

미국에서는 공공의 안전과 개의 개체수의 증가와 개의 소유주의 책임 있는 후견을 강제하기 위하여 개가 개 소유주의 사유지가 아닌 곳에서 소유주의 통제하에 있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는 것(running at large, Dog at large)을 금지하고 있다.¹⁴⁰⁾ 이를 위해 개의 성별이나 등록유무, 불임수술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개의 소유자는 개를 안전한 울타리가 있거나 자물쇠장치가 된 집, 창고 등에 기거하게 하고, 목줄(leash, lead)을 매어서 데리고 다녀야 한다.¹⁴¹⁾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하고, 동물에게 중성화수술을 시켜야하며 그 증명서를 7 일 내에 관할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¹⁴²⁾

묶인 줄이 풀리면서 뛰어나와 동네에서 놀고있던 이모(13.중1년)군, 박모(7)군과 박모(8)양 남매 등 3명의 다리와 가슴, 귀 등을 물어뜯어 상처를 입혔다. 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지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도 주인 이씨가 묶어놨던 줄이 다시 풀리면서 뛰어나온 진돗개가 이모(12.초등 6년)군과 이군의 어머니 전모(39)씨를 물었다 (중앙일보 2003.8.6).

2003년 8월 울산 동구 어린이집 마당에서 원생이 뒷마당에 묶인 알래스칸 맬러뮤트 종의 개에 물려 출혈과다로 사망했다. 이 개의 크기는 몸길이 90여 cm에 몸무게 40여 kg인 생후 10개월짜리 수컷으로 사고 직후 인근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검사를 한 뒤 안락사됐다(조선일보, 2003. 12. 10.).

139) 뉴질랜드의 Code of Recommendations and Minimum Standards for the Welfare of Dog에 의한다면, 개들은 매일 그 크기에 따라 작은 개는 30분씩, 큰 개는 2시간정도 목줄이나 사슬을 매지 않고 달리거나, 주변을 탐색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140) Clackamas City 5.01.050 D.

141) Arlington county Code of Ordinances (Virginia) Chapter 2-6.

142) Act to Prevent Dogs from Running At Large, <http://www.animal->

위생문제와 직결되는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는데, 이는 식당뿐 아니라 일반 상점, 대형 도·소매 체인점에도 해당된다.¹⁴³⁾

2. 독일

독일 각 주의 개보유법에서는 대개 위험한 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보통의 개의 통제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정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개보유법 제2조 제2항에서 위험예방을 위해 다음 지역을 다닐 때에는 개에게 적절한 목줄을 묶어 데리고 다니도록 하고 있다.¹⁴⁴⁾ 첫째로 보도, 상점영역, 도심, 군중이 많이 다니는 도로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개는 특별히 흥분상태에 놓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을 유발하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⁴⁵⁾ 둘째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울타리가 없는 공원, 정원, 녹지지역, 어린이놀이터에도 개에게 목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곳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의 다양성 때문이다. 여기서 울타리가 없다는 것은 모호한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공원이 나, 정원, 녹지지역에 눈에 띄게 그 표지판을 만들 것이 요청되고 있다. 셋째로 공공집회, 엘리베이터, 축제와 그 밖에 공공건물, 학교, 유치원에서 이루어진 군중들이 모이는 행사장에서의 목줄의무도 부과하고 있다.¹⁴⁶⁾

law.com/dogrunning.cfm. 아칸사스 주의 Fayetteville는 만일 주인도 없이 개가 돌아다닐 경우 사인이나 동물센터의 직원에 의해 동물보호소에 감금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비용을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주인을 인식할 수 있는 목걸이를 한 개의 경우 5달러, 허가증, 예방접종이 없이 개를 풀어놓은 경우 15달러, 1년에 두 번 이상 포획되면 25달러, 세 번 포획되면 50달러, 네 번 이상 1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10 일 이내에 목줄없이 돌아다닌 개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안락사를 시키게 된다. http://www.accessfayetteville.org/public-safety/animal_services/safety/pet_law.html.

143) “애완견의 출생·사망 철저히 관리”, 『소비자시대』, 2003. 3. 20면.

144) 이는 위험의 방지 및 제거를 목표로 하는 경찰법의 규정과 그 패를 같이 한다.

145) 이는 도로교통법과도 관련이 있는데, 독일 도로교통법(Straßenverkehrsordnung)에서는 교통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애완동물은 도로로부터 멀리 떨어져야만 하고,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에게서 인도될 경우에만 도로에 있는 것이 허용된다. 동물을 자동차로 인도하면서 데리고 다니는 것은 금지되지만, 자전거에서 개를 이끄는 것은 가능하다(§28 StVO).

146) Verwaltungsvorschriften zum Landeshundegesetz(VV LHundG NRW) RdErl. des Ministeriums für Umwelt und Naturschutz, Landwirtschaft und

Bremen 시의 개보유법 제5조에 의하면 위험한 개의 판정유무에 불구하고 모든 개의 소유주는 개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제1항), 공공교통수단, 상점, 백화점, 공중집회가 열리는 행사장에서는 꼭 목줄을 해서 데리고 다녀야 한다(제2항). 사유지이외의 곳에서는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목걸이를 꼭 착용해야 하고(제3항), 목걸이 없이 돌아다니는 개는 지역경찰청의 위임에 의하여 포획되고 소유주의 비용부담하에 감금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더 큰 의미를 진다. 쾰른의 녹지규정(Grünflächenordnung)¹⁴⁷⁾ 제7조에서는 개의 공공녹지의 출입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개는 공공녹지에서는 다른 이용자를 위협하게 하지 않고 녹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이끌어져야 하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개보유법에 따른 목줄의무가 적용된다(제1항). 그러나 식물원, 산림원, 조류관찰장 및 야생공원, 공원잔디밭 또는 공공 녹지안에 위치한 놀이터, 축구장 등에는 개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제2항). 공공녹지 중 개가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Hundefreilaufflächen)으로 인정된 곳에서는 개가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으며 덩치가 큰 개의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위험한 개와 특정한 품종의 개는 행동시험에 통과한 경우에만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 다니는 것이 허용된다(제3항). 개의 소유주가 이러한 규정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질서위반으로 다루어지고, 최고 1000 유로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제12조).

애완견과 버스, 전철, 지하철에 동승할 경우 목줄, 이동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큰 개의 경우는 일반요금의 반에 해당하는 운임료를 내야 한다.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동물은 차도로부터 격리해야 하고, 끈에 묶거나 소유주의 말에 잘 복종하는 경우에는 차도 근처에 갈 수 있다.¹⁴⁸⁾

Verbraucherschutz- VI-7-78.01.52 - vom 02/05.2003.

147) Ordnungsbehördliche Verordnung über die Aufrechterhaltung der öffentlichen Grünflächen der Stadt Köln

148) Straßenverkehrsordnung §28.

3. 오스트레일리아

(1) 개의 입장이 불가능한 지역

ACT의 가내동물법에서는 개의 통제편에서 사람이 개를 데리고 입장할 수 없는 지역을 주장관이 지정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시설,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운동장¹⁴⁹⁾,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운동장에는 학교수업시간동안 또는 학교의 스포츠 훈련을 포함하는 시간¹⁵⁰⁾에는 입장이 불가능하지만, 개의 소유주가 그곳에 살거나, 학교장이나 그 시설담당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입장이 가능하다. 스포츠활동을 하는 곳에 개를 데리고 들어가서는 안되며¹⁵¹⁾, 공공장소의 어린이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때,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가열시설이 있는 곳, 호수법 1976년의 15(a)에 의해 지정된 수영지역으로부터 10m 이내에는 개를 데리고 입장해서는 안된다.¹⁵²⁾ 동물원이나 식물원의 경우에는 그 감독자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하다.¹⁵³⁾

(2) 안전장치를 갖추면 개의 입장이 가능한 지역

개가 목줄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곳이라고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주나 보호자가 개를 목줄없이 공공장소에 데리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개의 소유주는 질서위반을 한 것이다.¹⁵⁴⁾ 그러나 그 공공지역이 개의 운동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경비견이거나 도그쇼에 참가하였거나 드라마촬영을 위해 입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¹⁵⁵⁾ 타인의 소유지에 들어갈 때도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에게

149) ACT Domestic Animals Law 2000, 42 (1).

150) ACT Domestic Animals Law 2000, 42 (2).

151) ACT Domestic animals Law 2000, 42 (3).

152) ACT Domestic animals Law 2000, 42 (4).

153) ACT Domestic animals Law 2000, 43 (2).

154) ACT Domestic animals Law 2000, 44 (1) (2) (3).

155) ACT Domestic animals Law 2000, 44 (4).

목줄을 해야 한다.¹⁵⁶⁾ 그레이 하운드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공공장소에 개를 데리고 들어갈 때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하고, 목줄을 했다 하더라도 동시에 4마리 이상의 그레이하운드를 공공장소에 데리고 들어가는 안 된다.¹⁵⁷⁾ 장애인은 보조견을 데리고 공공장소에 들어갈 권리가 있고, 이를 금지할 경우 10점의 벌점을 부과한다.¹⁵⁸⁾

4.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경우는 개통제법과 지방정부법에 의해 개의 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¹⁵⁹⁾ 이에 근거하여 크라이스트처치 시의 개통제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는 개 출입 금지지역, 개 출입제한지역, 개운동지역 등을 지방의회가 지역신문에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을 지정한 경우, 간판을 부착하여야 하고, 개 금지지역이 개들에게 공개될 경우의 시간 및 장소를 특정하여야 한다. 또 모든 개의 소유주나 책임자는 그 개가 개 출입제한지역에 있는 동안, 목줄에 의해 효과적인 통제를 하여야 한다. 개가 어린이 놀이기구로부터 10m 범위 내에 개가 들어가거나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¹⁶⁰⁾

또한 모든 개의 소유주는 매일 일몰 후 한시간 반이 지난 때부터 그 다음날 일출 전 한시간 반까지 그 개가 안전하게 묶여있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효과적으로 감금하거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감독 하에 두어야 한다.¹⁶¹⁾

5. 우리나라

자연공원관리법에 의해서 국립공원, 도립공원에는 개의 출입이 금지되고, 도시공원법에 의해서는 출입은 가능하나 개에게 목줄의무와 배변봉

156) ACT Domestic animals Law 2000, 45 (1).

157) ACT Domestic animals Law 2000, 48 (1) (3).

158) ACT Domestic animals Law 2000, 105 (1) (2).

159) Dog Control Law 1996 (New Zealand), 20 (1).

160) Christchurch city Dog Control Bylaw 1997, 11.

161) Christchurch city Dog Control Bylaw 1997, 10.

투를 지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위배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어린이공원이나 시내에서의 개의 목줄의무, 입가리개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고, 다만 시민들의 에티켓에 호소하고 있을 뿐이다.¹⁶²⁾ 환경단체와 조경학자들은 공원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출입제한 등의 적극적인 규제를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애견인들은 개가 최소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제공해야 한다며 배변봉투를 소지한 경우에는 출입하게 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¹⁶³⁾

제 3 절 생활방해

1. 배설물처리

개의 배설물은 질병 감염의 위협이 된다. 기생충감염의 우려도 있지만, 공원을 비롯한 공공 장소에 배설되어 보기에 좋지 않고 사람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환경을 즐길 권리를 침해하며, 이를 모두 국가가 처리해야 한다면, 이 환경오염의 피해액은 상당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과 불편함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미국, 독일, 뉴질랜드의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동물 편에서는 개의 배설물을 즉시 제거할 것과 이를 위반한 경우는 경범죄로서 과태료부과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¹⁶⁴⁾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는 배설물제거의무의 실효성강화를 위하여 배설물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배설물제거도구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을 내도록 하였다. 수도특별구(ACT)의 가내동물법에 의하면 개의 보호자는 공공장소 또는 강가에서 개의 배설물을 위생적으로 제거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는 최대한 5점의 벌점을 주고, 개의 보호

162) 기타 장소의 출입여부와 관련해서는 전술한 제2장 제2절 참조.

163) “우리도 법대로 살고 싶어요”, 뉴스메이커 512호 통권 12권 8호, 2003. 2. 27.

164) Köln Grünflächenordnung, §7 Abs. 4, §12 Abs. 1 Nr. 10. 쾰른의 도로규정(Kölner Straßenordnung) 제2조에서는 동물의 인도자가 쾰른의 모든 거리, 도로, 광장, 지하철, 전철, 공공화장실, 우물, 문화재 동상, 의자, 공공교통수단의 정거장 등에서 개가 오염시키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되고, 오염되었을 경우 즉시 치울 의무가 있다; Dog Control Act 1996 (New Zealand), 20 (1) (h).

자가 공공장소 또는 강가에 개를 데리고 들어가면서 개의 배설물을 위생적으로 치울 수 있는 도구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한 1점의 벌점을 준다.¹⁶⁵⁾ 각 공공장소에는 이를 처리할 도구들을 갖출 의무가 없고, 이를 치우지 않았을 경우 현장에서 50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배설물처리봉투 내지 도구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¹⁶⁶⁾ 퀸스랜드의 브리즈번 시의 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개 소유주는 항상 자신의 개의 배설물을 제거할 도구를 가지고 다녀야 하며 공공장소에서 이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으로 150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를 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의 실효성강화를 위해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2004년 9월 1일부터는 배설물을 담은 도구들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도 37.50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를 내도록 법을 개정하였다.¹⁶⁷⁾

2. 소 음

개가 짖는 것은 개의 의사표현을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써 따분함, 아픔, 스트레스 상황을 나타내주는 것이고 주인의 무관심이나 학대를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사육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개가 짖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개를 기르는 사람과 이웃주민간의 '양해 기대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 때문이다. 각국의 법률에서는 이러한 개짖음으로 인한 소음을 생활방해(nuisance)로 보고 소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위반에 따른 절차를 법에 규정하고 있다.

미국 오레건주 법 609.095에 빈번하거나 시끄러운 소음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끼치는 것을 공적인 불법방해(public nuisance)¹⁶⁸⁾

165) ACT Domestic Animals Law 2000, 46 (2).

166) <http://www.urbanservices.act.gov.au/envpets/pets/dgctfactsht/dogdroopings.html>

167) http://www.brisbane.qul.gov.au/residential_services/animals/local_law.shtml.

168) 공적 불법방해의 종류는 이미 우리가 다룬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사람을 무는 행위, 개의 사육자의 사유지가 아닌 토지에서 사람을 쫓거나 위협하거나 차량을 쫓아가는 행위, 개사육자가 아닌 자의 재산의 침해나 파괴행위, 개사육자의 사유지가 아닌 토지에 쓰레기를 어지럽히는 행위, 빈번하고 장기적인 소음으로 인해 사람을 방해하는 행위, 발정난 암컷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행위, 가내동물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죽인 행위.

로 보고 있다. 이러한 공적인 불법방해가 일어났다면, 순경이나 주보안관, 대리인, 경찰관 또는 개통제관(dog control officer)이 개를 감금하거나 소유자를 법원에 소환하거나 양자를 병행할 수 있다.¹⁶⁹⁾ 만일 개로 인한 공적 불법방해가 시정되지 않고 반복될 경우, 250달러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¹⁷⁰⁾ 오레건 주 Junction City의 Ordinance No. 686을 보면, Section 14에서 공동주택에 사는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빈번한 개의 짖는 소리로 인하여 불편을 줄 경우에 개인적으로나 우편으로 관청이나 개통제청에 이를 고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서도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서 500달러 이하의 벌금을 지불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다.¹⁷¹⁾ 오레건 주 클랙카머스 시의 경우 개소유주가 주간에 시간당 15분 이상씩 개짖는 소리가 나는 것을 방치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소음으로 보고 1년에 3번 이상 개의 소음발생으로 인해 벌금을 낼 경우 개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된다.¹⁷²⁾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동 주거 조항이나 주인이 제시한 임차계약조항에 의해 임대주택에서는 애완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된 경우가 있는데, 전형적인 표준계약서에도 ‘애완동물금지조항(no-pet clause)’이 특약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다툴 수 없다. 다만 맹인견의 사육을 이유로 주택임대차에 차별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¹⁷³⁾ 그 밖에 성대수술(debarking operation)¹⁷⁴⁾을 한 애완동물만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인은 세입자에게 저녁 10시 이후 일체의 소음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법적 효력이 있다.¹⁷⁵⁾

독일의 경우 개를 임대주택에서 기를 수 있는가의 문제는 임대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된다. 임대계약서에 개보유를 금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개를 키

169) ORS 690.090 (1).

170) ORS 609.990 (2).

171) Junction City Ordinances No. 686, Section 23.

172) Clackamas County (oregen) Title 5.01.50, 5.01.080.

173) http://www.animal_law.org/housing/housfed.html; 長谷川貞之, アメリカのペット法事情, 法律時報 13~14면.

174) 이는 동물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수의사에 의해서 성대수술이 행해지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175) “애완견의 출생·사망 철저히 관리”, 『소비자시대』 2003. 3. 21면.

울 수 없고, 아무런 규정이 없을 경우 한 마리의 개는 키울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안전상 임대인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며 이로 인해 다른 입주자들에게 심각한 소음 또는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¹⁷⁶⁾

오스트레일리아의 퀸스랜드의 브리즈번 시는 만일 자기소유의 개가 과도하게 짖고 이웃을 괴롭힐 경우에는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소음의 기준으로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시간 6분 이상 시끄럽게 하거나,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매 30분마다 3분 이상 시끄럽게 할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우선은 이웃에게 명백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만일 개의 소유주와 연락이 안 되거나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의회에 신고하고,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를 밟게 된다.¹⁷⁷⁾

뉴질랜드 개통제법에서도 개 소유주는 개가 계속해서 큰소리로 짖거나 울부짖거나 여하한 방법에 의한 것이든 간에 타인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¹⁷⁸⁾ 이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 감독관이나 개경비원이 접수한 경우에 소음이 발생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조사를 위해서 개소유주의 사유지나 건물에 들어갈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땅이나 건물에서 개를 치우도록 요구할 수 있다.¹⁷⁹⁾ 개의 소유주는 7일 이내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7일이 지나도록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500 뉴질랜드 달러를 넘지 않는 약식재판에 처해지고 그 개는 개감독관이나 개경비원에 의해 제거된다.¹⁸⁰⁾

우리나라의 경우 개의 소음으로 많은 분쟁이 생기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경찰에서는 애완견으로 생기는 시비는 우선 당사자간에 대화로 해결하는 편으로 유도하고 있다.¹⁸¹⁾

176) <http://www.mieterbund.de/recht/mietrecht-aktuell/mietrecht-a-z/haustierhaltung>.

자세한 내용은 樁久美子, *ドイツのペット法事情*, 法律時報 73卷 4号, 19면이하 참조.

177) http://www.brisbane.qld.gov.au/residential_services/animals/dogs/index.shtml 브리즈번 시의회에서는 무료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개가 짖는 이유, 짖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178) Dog Control Act 1996(New Zealand), 55 (10) (e).

179) Dog Control Act 1996(New Zealand), 55 (1).

180) Dog Control Act 1996(New Zealand), 55 (7), 56.

181) 동아일보 1996. 1. 19.

제 4 절 개의 등록과 이름표착용

이미 위에서 살펴본 문제들은 결국 개를 소유하는 자의 사회적 책임의 약화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와 소유주의 관계를 확인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개의 품종, 성별, 나이, 위험성여부 등과 개의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개의 예방접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름표착용¹⁸²⁾ 및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매년 이를 등록비를 내고 갱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들도 있다.

1. 미국의 개등록제(Pet licensing)

개를 등록하는 경우의 장점으로 등록된 이름표를 착용한 애완견을 잃어버린 경우 그 개가 유기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주인에게로 빨리 돌아오게 할 수 있으며, 개가 다친 채로 발견될 경우 응급의료행위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사항의 기재서류에 의거하여 위험한 개로 판명된 개를 조사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등록비로 인해 잔인한 행위, 학대, 유기와 무관심을 조사하고, 유기견들이 새롭게 입양시키는 동물보호소의 설치 및 운영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개를 등록해야 하는 시기는 대개 생후 6개월 또는 영구치가 나거나 취득한 지 30일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¹⁸³⁾, 등록비는 주로 1년을 기준으로 하고, 불임수술을 받은 개와 노인이 키우는 개에 대해서는 등록비를 일정 정도 감경하고, 맹인인도견, 청도견 등은 등록비가 감면해주는데, 그 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다.¹⁸⁴⁾ 지방자치단

182) 세계 소동물 수의사회에서는 세계 각국에 버려진 개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칩을 장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애완견은 또 하나의 가족”, 『소비자시대』 2003. 3. 13면. 미국 및 프랑스의 애완견의 출생·사망관리에 대하여는 “애완견의 출생·사망 철저히 관리”, 『소비자시대』 2003. 3. 20~22면.

183)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지체한 과태료를 20달러를 포함하여 등록비를 내야 한다. Chapter 6.04.240.

184) 오레건 주 크랙카마스 시의 경우 1년에 25달러의 등록비, 불임수술을 받은 개는 13달러를 내고, 노인이 기르는 개는 2달러를 감경한다. 같은 오레건 주의 정선 시의 경우

체에 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사에 의한 발부된 광견병예방접종증서를 첨부해야만 한다. 등록 후에는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광견병예방접종여부가 기록된 이름표를 받게 되는데, 이는 개가 항상 목걸이에 부착시켜야 하며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¹⁸⁵⁾

개의 등록은 위험한 개의 유무와는 관계없으나, 다만 위험한 개로 판명된 경우에는 마이크로칩¹⁸⁶⁾을 주입시키고, 이를 개의 등록원부에 기재한다.¹⁸⁷⁾

2. 독 일

독일에서는 개를 보유하려면 등록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유와 관련된 개보유세(Hundesteuer)를 개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내야 한다.¹⁸⁸⁾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보유세금조례(Hundesteuersatzung)에 따라 정해지는데, 두 마리 또는 그 이상의 개 혹은 위험한 개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우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¹⁸⁹⁾ 맹인안내견, 공무집행

는 1년에 12달러가 기본이며, 불임수술을 한 개는 6달러, 노인은 5달러를 내게 된다.
185) <http://www.co.clackamas.or.us/dc/laws.htm>. Title 5 Animals, Chapters 5.01.040.

186) 마이크로칩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존재해왔다. 마이크로칩은 크기가 쌀알만하며 개의 피부속에 이식하게 된다. 이 시술은 몇 초밖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 마이크로칩으로 인해 모든 개는 자신의 고유의 개별적이고 전세계적으로 알 수 있는 고유인식번호를 가지게 된다. 판독기를 통해 이것을 읽게 되고, 주인이 확인되며, 그의 주인에게 신속하게 돌려줄 수 있다.

187) ORS 609.168.

188) 1500년대 동부 및 중부 독일에서는 처음으로 개사료(Hundekorn)라는 용어가 등장해서 부분적으로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다: 이는 식량범위내에서 농부들의 개집을 지어줄 의무를 풀어주는데 기여했다. 1658/1659년부터는 헬데하이머 도시회계규정에 의해 세금을 내도록 하였다. 19세기부터 독일 각 지방들은 개세금을 경찰적인 이유에서 주로 도입하였고, 부분적으로는 호화세로(프로이센 1810-1814), 부분적으로는 사용료(바이에른 1876)로 거두어들였다.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세금권과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바덴과 헤센-담슈타트와 같은 주에 의해 국가적인 부분을 빼앗아가려고 해왔다. 바이마르시대는 주의 개세금이나 지방자치단체세금법은 “지역적인 세금”에 속하게 하였고 1949년 본 기본법이후부터 개세금은 “지역과 관련 있는 세금”(1969년부터는 재정개혁부터 “지역소비세금”으로 다루어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세금으로 규정하였다. 2001년에 거두어들인 개보유세금은 총 211,600,000 유로였다.

189) 도시의 경우는 농촌의 경우보다 개보유세가 비싼 편이다. 그 액수는 매우 다양하여 한 마리당 14유로에 그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40내지 45유로로 책정한 지방자

견, 산림단속견, 차량감시견은 각 법적 규정들에 따라 세금이 감면되기도 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도 한 마리의 개를 키울 경우에는 세금을 감경해 준다. 특히 위험한 개에 대한 높은 세금은 질서유지적 목적과 개의 숫자를 제한하는 데도 기여한다.¹⁹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쾰른시의 개보유세금조례(Hundesteuersatzung der Stadt Köln)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개가 생후 6개월이 지난 후, 개를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세금은 개 한 마리당 141유로, 두 마리 이상일 경우는 각 마리당 171유로, 세 마리 또는 그 이상의 개를 보유할 경우에는 각 마리당 201유로를 내야 한다(제2조 제1항). 그러나 맹인인도견, 또는 청도견 내지 안내견의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한 마리를 키울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18유로만을 내도록 감면해주고 있다(제3조, 제4조). 베를린 시의 경우도 개 한 마리당 1년에 120유로, 개를 더 키울 경우에는 각 마리당 180유로를 내야 한다.

등록은 주인의 주소지의 개보유세담당과에 해야하고, 개보유세를 낸 후에는 개이름표¹⁹¹⁾를 주는데 공공도로에서는 이를 잘 보이게 부착하고 다녀야 한다. 만일 세금을 내지 않은 개가 경찰이나 조세당국의 조사에 의해 발견되면 세금포탈죄를 범한 것이 된다.¹⁹²⁾

치단체도 있다.

190) 1994년부터 불테리어를 기르던 사람이 1995년에 Roßlau시에 도입된 개보유세금조례에 의해 자신의 개가 투견(Kampfhunde)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개는 일년에 90 DM을 내는데 비해 본인은 720 DM을 내야하는 것을 부당하다며 세금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조례규정이 이미 개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예기치 않은 소급효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개의 소유자와의 평등의 원칙을 고려할 때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처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연방행정재판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의해 이러한 차이를 두는 것은 가능하며 다른 개와 구별하여 더 많은 비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험예방을 위한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BVerwGE 11C 8.99- Urteil vom 19. Januar 2000, DÖV 2000, 554/BVerwGE 110, 265.

191) 만약 세가지 유형에 속하는 개(위험한 개, 특별한 종류의 개, 큰 개)에 속한다면, 그 개를 수의사에게로 데려가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게 해야할 의무가 있다.

<http://www.stadt-koeln.de>.

192) <http://www.berlin.de/SenFin/OFD/hundesteuer.html>.

3. 오스트레일리아

개의 소유주는 반드시 2001년 6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2002년 가내동물법에 요구된 규정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생후 8주 이상인 개는 등록시켜야 하는데, 개가 4주 이상 주인에게 머물러있지 않거나, 주인이 4주 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의 등록은 매년 9월 30일에 갱신되어야 하고, 등록증은 매년 새로이 갱신되며 등록증이 개목걸이에 붙어있어야 한다. 개의 소유주는 개가 중성화수술¹⁹³⁾을 했거나, 복종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비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 퀸즈랜드의 브리즈번시의 경우에는 개 한 마리당 1년에 72(노인의 경우 36)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불임수술을 받은 개의 경우에는 25(노인은 10)오스트레일리아 달러, 1997년 1월 1일 이후 위험한 개라고 선언된 개의 경우에는 305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를 내야 한다. 소유주나 개가 상주하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개의 사실상의 관리자가 바뀔 경우, 개가 중성화수술을 한 경우, 개가 죽었을 경우에는 등록의 변경을 신청한다. 이의 관할관청은 가내동물서비스국이다.¹⁹⁴⁾

4. 뉴질랜드

개통제법 1996에 의하면, 개를 소유한 모든 사람은 개가 생후 3개월이 지난 후 등록을 해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7월 1일 전에 갱신되어야 한다. 비용은 불임수술을 한 개, 직업견의 경우에는 감경해주어야

193)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중성화수술을 하여야 한다. 매년 수천마리의 개가 안락사되는 것은 책임없는 교배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특별하게 교배나 전시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면(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허가를 필요로 함) 모든 개들은 생후 6개월이 되는 때에 반드시 중성화수술을 시켜야 한다. 2000년 가내동물법은 공공장소에 발정기에 있는 암개를 들여보내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를 중성화시킬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개가 줄어들 것이며, 적은 수의 개가 안락사되고, 동물복지기관에게도 하중이 적어지고, 개가 더 오래 살 수 있으며 등록비도 절감된다. 덧붙여 개를 중성화시키는 것은 개가 배회하는 욕구를 줄여주고, 심각한 개의 질병등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194) http://www.brisbane.qld.gov.au/residential_services/animals/dogs/index.html.

한다.¹⁹⁵⁾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적발되면 200 뉴질랜드 달러의 벌금과 함께 등록을 해야 한다.¹⁹⁶⁾ 등록을 할 때에는 개 소유주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개의 품종, 색, 두드러진 반점, 개의 불임수술여부를 포함한 성별, 개의 문신이나 다른 영구적인 신분증명의 묘사, 개목걸이의 등록번호 등이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¹⁹⁷⁾ 크라이스트처치 시의 경우는 맹인인 도견, 청도견의 경우는 등록비가 제외되며, 중성화수술을 한 개는 1년에 100 뉴질랜드 달러, 일반 개는 110 뉴질랜드 달러, 위험한 개로 판명된 경우에는 150 뉴질랜드 달러를 내도록 하고 있다.¹⁹⁸⁾

5. 우리나라

현행법체제에서 애완견의 이름표와 등록제도에 가장 근접한 내용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 가축전염병시행규칙 제19조의 광견병예방접종 검사증휴대와 수의사법시행규칙 제9조의 수의사의 진단서부분의 3년 보관의무에서 도출해낼 수 있겠다. 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가축으로 정의되고, 광견병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증명서의 발급·표시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 제3항, 제4항).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시행규칙 제19조는 낙인·천공·귀표·목걸이 등의 방법으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하였는데, 개에게는 목걸이가 적합하다 하겠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9조는 수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 여기서는 예방접종증명서에 동물의 종류·품종·성별·이름·모색·특징 및 연령(불명시에는 추정연령)등, 병명, 동

195) Dog Control Act (New Zealand) 37 (1).

196) Dog Control Act (New Zealand) 42 (1), <http://www.ccc.govt.nz/animals/DogRegistration.asp>.

197) Dog Control Act (New Zealand) 34 (1).

198) <http://www.ccc.govt.nz/animals>.

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동물병원의 명칭·개설장소·전화번호, 수의사의 성명·면허번호 등을 적도록 되어 있고(제1항), 진단서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부분을 3년간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그러나 광견병예방접종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봄·가을로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있지만 그 기록조차 제대로 보관되지 못하고, 광견병접종 의무를 해태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있는 조항조차 사문화되어 있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실에서 행정력문제를 감안할 때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국과 같은 애견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의견¹⁹⁹⁾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에는 무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동물병원협회는 일본의 광견병예방접종제도의 실효성 있는 적용으로 광견병이 거의 근절된 예를 들면서, 광견병예방접종을 통한 개의 등록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경우, 동물병원협회차원에서의 예방접종기록을 보관하여 관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만일 이렇게 광견병예방접종을 강제적으로 의무화하고, 법을 실효성을 담보할 경우, 개들은 목걸이를 통해 소유주를 파악하고, 그 예방접종현황을 알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99) <http://www.animals.or.kr/ban/ban.php>.

제 5 장 멧음 말

이미 애완견이 소유주와의 관계에서 많은 기쁨과 동료감을 주며, 소유주와의 관계에서는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의 애완견사육이 위험과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의해 교육되어지는 애완견 그 자체, 즉 개를 키우느냐 키우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애완견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고 애완견의 공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사회공동체의 구성원과 애완견사육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애완견소유주간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도시공원법의 개정에서도 극렬하게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즉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한다든가 개의 배설물을 즉시 치운다든가, 공동주택 내에 잘 적응하도록 교육을 시킨 애견인들과 좁은 공원 등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무책임한 주인에 의해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개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간에 흑백논쟁이 벌어져 결국 도시공원에서는 목줄의무가 부과되고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은 도시공원법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법에서건 이러한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애완견사육과 관련하여 동물보호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애완견과 애완견의 소유주의 문제로 보고, 애완견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나가기 위한 기초로 작성되었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동물보호규정이 매우 미흡하므로, 우선 동물보호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법의 개정은 국민의 인식변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애완견사육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법적인 효력을 지닌 규정을 갖추고, 몇몇 사회적 책임감을 다하지 못한 일부 애완견 소유주들

을 각성시킨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인식이 동물보호의 정당성에 더 공감
을 느끼게 되어 동물보호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이바지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이는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동물보호법과 개에 대한 통제가 사회적으
로 합의되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
다. 물론, 외국의 경우 등록제를 전제하여 개를 관리하는 관청이나 담당
자를 두는 등 그 체계가 잡혀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일시에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데에는 시기상조인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제도
에서도 찾을 수 있으나 사문화되어버린 조항에 대해서는 외국의 몇몇 입
법적 해결책을 참고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고,
새로운 몇몇 제도의 개별적인 도입이 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각 문제의 해결책의 입법적 도입방안에 대하여 언급해보겠다.

1. 개등록제의 도입여부

외국의 예에서 보다시피 책임 있는 개의 보유와 관련하여 개의 특징과
그 소유주의 주소·성명을 연결시킬 수 있는 행정적 문서를 매년 작성하
도록 하는 개등록제는 애완견의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등록비 또는 세금을 통하여 이를 강제하고 있으나
행정력의 부족으로 완전한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
라의 경우는 광견병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증명할 수 있는 목걸이를 하
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방법의 조항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광견병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500만
원의 과태료조항은 거의 현실성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담당부
서가 현재 광견병예방접종기간을 정한 것처럼 광견병접종일제조사기간을
정하여 가축전염병예방접종증명목걸이의 부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무작위라도 그 접종여부를 검사하고, 광견병예방접종을 하였으나 목걸이
를 부착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온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 유효한 예
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와 즉시 예방접종의
무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실효성확보를 위해서는 주인의 통
제없이 목걸이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개에 대하여 유기견으로 간주하

겠다는 조항을 동물보호법 내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확실하게 언급하는 것과 일부러 동물을 유기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5만원의 과태료가 아니라 그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²⁰⁰⁾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몇몇 애완견사육의 지침을 지키지 않는 애완견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각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각 동별로 애완견의 칼라사진과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을 묘사한 글, 불임수술여부, 광견병 및 기타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²⁰¹⁾ 이를 통해 분쟁해결이나 애완견의 소유주에게 책임을 확인시키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2. 위험한 개의 분류와 그 손해배상책임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영국, 독일과 같이 위험한 개의 품종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품종에 따라 위험한 개로 분류하는 것에는 분류상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의 크기가 큰 경우와 한번 문 전력이 있는 개를 파악하여 소유주에게 강화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외국에서 위험한 개로 특정지워진 품종이나 커다란 개가 많이 보급되지 않아 외국과 같이 위험한 개에 관한 법률을 정할 필요는 없겠으나 경찰법적인 관점에서 위험의 일반예방을 위해 몇 가지 안전수칙을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에는 피해자가 자기가 기르던 개나 알고 있던 개에게 물려 사망에 이른 사고가 많았고, 애완견의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의 입장에 반대하

200) 현재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기동물로 보고 있으며(동물보호법 제7조 제1항,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기동물을 데려가는 경우에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물보호법 제5조). 동물을 버린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2호에 의해 위해동물 관리소홀로 5만원에 과태료에 처해진다.

201) “공동주택에서 동물기르기”, 『동물은 내친구』, 1997. 7, 5면.

는 두 번째 이유로 개에 의한 위협을 들고 있는데, 이는 목줄이나 입마개의무를 통해 위협을 현저하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에 알맞은 사육이라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본다면 입마개의무는 개를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공격성을 키울 수도 있으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개에 대하여 입마개규정을 적용시킨다면 집행과 통제는 편할 수 있겠지만, 코와 입 사이가 짧은 개들에게 입마개는 고통을 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으므로, 모든 개에게 입마개의무를 지울 것이 아니라 일정한 크기 이상인 개(어깨높이 40 cm 이상, 몸무게 20 kg 이상)에 대하여 공원이나 길거리를 다닐 때 입마개를 꼭 착용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줄의무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준수하고 있지만, 여러 마리의 개를 동시에 이끄는 행위 등을 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경범죄처벌법에 새로운 규정으로 둘 수도 있을 것이고, 후술하겠지만 공원관리조례 등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개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9조에 의해 개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데, 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개를 자극하여 피해를 유발시켰는지, 개가 이미 사람을 문 전력이 있는지, 소유주가 목줄의무 및 입마개의무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²⁰²⁾ 또한 교상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형사상 과실치사죄가 성립되고, 이 때 경찰이 이미 신고된 위험한 개에 대한 접수를 받았을 경우 바로 개에게 살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조속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²⁰³⁾

202) 보험종목별 허가제를 도입하는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동물보험을 예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애완동물의 분실 및 부상비용을 담보하는 내용 뿐 아니라 동물로 인한 인명사고나 재물손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203) 전남 고흥군의 한 마을에서 주민 한 명이 개에게 물리고, 그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다른 한 명이 인근의 잡종 도사견에 물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때 사건 현장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장모씨가 기르던 도사견 8마리를 유력한 용의견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오던 중이었다. 이렇게 제2의 참사를 불러온 이유로 마을 주민들은 수차례 개를 도살하도록 경찰에 건의했으나 경찰이 이를 묵살해서 벌어진 사건으로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국과수와 전남대 수의학과 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 주인을 입건할 방침이었다”며 “개 주인에게 압수물

3. 개의 배설물제거의무

현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7호에 의해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법에서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의 규정인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에 따라 도시공원관리법에서도 개의 배설물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사후조치에 불과하고, 이미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이와 관련하여 공원관리과에 신고전화도 설치하였으나 한 건의 접수도 없었던 경험과 현장보존방법과 경찰의 개입할 필요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실효성확보를 위해서는 외국의 입법례처럼 애완견을 동반하고 공원에 입장할 경우 배설물을 치울 봉투와 휴지 등을 미리 제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만약 이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와 같이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것과 동일한 과태료를 물리거나 배설물을 제거할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키고, 자연공원법 제34조의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이 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는 내용을 도시공원관리법에도 명문화할 경우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보관 각서를 받고 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잘 간수해달라고 개들을 맡겼는데 개 줄이 묶인 상태에서 이들이 탈출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두 번째 희생자가 나온 날 개 주인 장씨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장씨 소유의 8마리를 모두 도살했다(동아일보, 2003. 6. 19).

4. 공원, 공공장소, 교통수단의 이용 및 공동주택에서의 애완견사육문제

이미 위험발생가능성과 개의 배설물제거의무 등이 애완견의 공원 및 공공장소의 출입을 막는 요인이라는 사실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해보았다. 모든 공원이나 녹지지역에 개의 출입을 무조건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정된 녹지지역에서 인간들이 휴식을 취하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이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해 특정한 지역, 애완견의 공격과 배설물에 의한 오염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 어린이놀이터, 유아원, 유치원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애완견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지역에는 목줄과 이름표를 달고 개 소유주 또는 관리자의 통제하에 입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옳겠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부족한 녹지사정에 미루어 보아 외국과 같이 개운동지역을 정하는데는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장소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개가 목줄없이도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효력을 가진 법률에 의하여 정할 수는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를 정하고, 각 해당지역에 팻말을 부착하여 일반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교통수단의 이용은 각 법령에서 이미 맹인견이 아닌 애완견의 동승을 대체로 금지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철이나 버스의 사정을 고려할 때 출퇴근시간이 아닌 시간에 작은 애완견을 이동장에 넣어 동승하는 것은 인정할 수도 있겠다.

공동주택에서의 애완견사육은 소음 및 아파트 화단사용, 어린이 놀이터입장, 배설물처리 모든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공동주택 내에서 애완견의 사육을 확일적으로 금지 또는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단체 “동물은 내친구”는 공동주택에서는 애완동물을 소유한 입주자, 소유하지 않은 입주자, 수의사 등으로 애완동물 사육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²⁰⁴⁾ 공동거주의 모든 구

204) “공동주택에서 동물 기르기”, 『동물은 내친구』 1997. 7, 5~6면.

성원이 서로의 책임과 약속을 완수하자는 지침을 만들어 애완동물의 소유자 모두에게 동등한 제한과 동등한 책임을 부여하며, 자신의 애완동물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소유자에게는 어느 한도내에서 등급별 벌금을 내도록 할 수도 있도록 하자는 내용은 매우 설득력을 가진다.

이상에서 애완견관리와 관련된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독일의 위험한 개보유법이나 뉴질랜드의 개통제법 1996과 같이 전국적인 효력을 가진 애완견관련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해 자신의 지역, 도시 또는 농촌의 현실에 알맞는 애완견관리조례를 만드는 방법이 더 타당할 것이다. 조례에 규정된 내용은 국민의 건강과 안녕, 사회질서유지를 위해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필요 최소한도의 제한을 가하는데 그칠 경우 주민의 의무부과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지는 않고, 다만, 비례원칙을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이 밀집한 지역, 음식점, 대형백화점, 식품유통업의 애완견출입여부는 각 영업소별 지침에 따르게 될 것인데, 행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무엇보다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애완견을 기르는데 있어서의 사육지침 등을 홍보 교육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I. 국내문헌

- J.C. 블록(과학세대 옮김), 『인간과 가축의 역사』, 새날 1996.
- “공동주택에서 동물기르기”, 『동물은 내친구』, 1997. 7(통권 8호).
- “문제있는 애완견 유통시장의 현주소”, “애완견 소비자 피해실태와 소비자 보호제도 비교” 『소비자시대』, 2003. 3.
- “애완동물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면 위험해요!”, 『소비자시대』, 2003. 8.
- 미디어다음 르포, 애완동물의 명암 참조(2003. 9. 30.), http://feature.media.daum.net/PrintPage/030930_dog/article/index.html.
- 박원순, 「‘동물권’의 전개와 한국인의 동물인식」, 『형평과 정의』 제9집 1994. 11, 324-353면.
- 신남식, “인간과 동물의 상호관계”, 03 1st HAB(Human Animal Bond) 국제 심포지움(2003. 11. 2) 자료집.
- 아름폼 매거진 제5호, 「버리세요, 애완동물!, 주워 받으세요, 반려동물!」, (<http://www.withanimal.net/tt-cgi/tt/board.cgi?act=read&db=m01&page=1&idx=6>).
- 제임스 서펠(윤영애 옮김), 『동물, 인간의 동반자』, 들녘 코기토 2003.
- 천병호(역), 해외입법 「동물보호법」, 『입법조사월보』 230(’94. 6), 176~192면.
- 헬무트 브라케르트, 코라관클레 펜스(최상안, 김정희 역), 『시와 그림을 통해서 본 개와 인간의 문화사』, 백의 2002.

참 고 문 헌

<http://animals.seoul.go.kr>

<http://sihe.seoul.go.kr>

<http://www.kaap.or.kr> (한국동물보호연합)

<http://www.kaha.or.kr> (한국동물병원협회)

<http://koreaanimals.or.kr> (동물보호협회)

<http://animals.or.kr> (동물자유연대)

II. 외국문헌

1. 논문 및 단행본

椿久美子, ドイチのペット法事情, 法律時報 73卷 4号.

新美育文, イギリスのペット法事情, 法律時報 73卷 4号.

長谷川貞之, アメリカのペット法事情, 法律時報 73卷 4号.

青木人志, 動物の比較法文化- 動物保護法の日歐比較, 有斐閣, 2002.

Act to Prevent Dogs from Running At Large, <http://www.animallaw.com/dogrunning.cfm>.

Arbeitsgruppe Gefährliche Hunde AGGH, Gefährliche Hunde sinnvolle und zielgerichtete Massnahmen, 1999, http://www.bvet.admin.ch/tierschutz/d/berichte_publicationen/heimtiere/kampfhunde/aggh_gef_hde.pdf.

Argumentarium der Arbeitsgruppe "Gesetzgebung betr. gefährliche Hunde" des Bundesamtes für Veterinärwesen (Stand 21. Dezember 2000)- Swiss.

Bates, Alan, Detailed Legal Discussion of the Licensing and Regulation of Pet Shops, Michigan State

- University- Detroit Collge of Law, 2002 (http://www.animallaw.info/nonus/articles/art_details/print.htm)
- Hirt/Maisack/Moritz, Tierschutzgesetz Kommentar, Verlag Franz Verlag München 2003.
- Kluge(Hrsg.), Tierschutzgesetz Kommentar, Verlag W. Kohlhammer 2002.
- Marmer, Lynn, The New Breed of municipal dog control laws: are they constitutional?, <http://www.idir.net/~wolf2dog/review.htm>.
- Matter, Hans C., Epidemiologie von Biss- und Kratzverletzungen durch Wirbeltiere in der Schweiz: Angaben über Hundebisse(ohne Rassenangaben), 1998.
- Murswiek, D(in: M. Sachs(Hrsg,)), Art. 20a zu GG Kommentar 3. Aufl.
- Stiftung für das Tier im Recht, 『Tier, keine Sache - Dokumentation für den Nationalrat』, Zürich, den 1. August 2002.
- Tierschutzbericht 2003 - Bericht über den Stand der Entwicklung des Tierschutzes,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5/723(26.03.2003)
- Tomaselli, Paige M., International Comparative Animal Cruelty Laws, Michigan State University Detroit College of Law 2003; http://www.animallaw.info/articles/art_details/print.htm.
- Vogel, Tracy/Writer, Staff, 「Pet Lemon Laws」, <http://www.vet-centric.com/magazine/magazineArticle.cfm?ArticleID=1380>.

2. 각국의 법, 조례 및 지침

(1) 일 본

狂犬病豫防法 (平成 11.7.16, 法律 87号),

http://jorei.cne.jp/law/kyoukun_htt.html.

家庭動物等の飼養及び保管に關する基準(平成 11年 改正公布), <http://jorei.cne.jp/law/katei.html>.

(2) 미 국

Arlington County Code of Ordinances(Virginia, USA),
Chapter 2 Animals and Fowl

Douglas County Ordinance(Oregon, USA), 6.08.

http://www.accesfayetteville.org/public_safety/animal_services/safety/pet_laws.html.

<http://www.co.clackamas.or.us/dc/laws.htm>. Title 5 Animals.

Junction City Ordinances (Oregon, USA) No. 686.

Oregon revised Statutes 2001, Chapter 608

(3) 독 일

Gesetz über das Halten von Hunden in Stadt Bremen
vom 1. 1. 2002 und Begründung.

Haltungserlaubnis für einen Hund bestimmter Rassen,
<http://www.stadt-koeln.de>.

<http://www.berlin.de/SenFin/OFD/hundesteuer.html>.

Hunde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Lan-

deshundegesetz-LHundG NRW) vom 18. 12. 2002,
<http://sgv.im.nrw.de>.

Hundsteuersatzung der Stadt Köln vom 15. 10. 2001

Niedersächsisches Gesetz über das Halten von Hunden
(NHundG) vom 12. Dezember 2002.

Ordnungsbehördliche Verordnung über die Aufrechterhaltung
der öffentlichen Grünflächen der Stadt Köln (Kölner
Grünflächenordnung)

Ordnungsbehördliche Verordnung übe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im Gebiet der Stadt Köln,
insbesondere auf den Straßen und in den
U-Bahn-Anlagen(Kölner Straßenordnung -KStO) vom
18. Dezember 1985. in der Fassung der 3.
Änderungsverordnung vom 04. 12. 2001.

Tierschutz- Hundeverordnung vom 2. Mai 2001 (BGBl 2001
I, 838).

Verfassungsgerichtshof Rheinland-Pfalz, Pressemitteilung
Nr. 2/2001 v. 30. 08. 2001.

Verwaltungsvorschriften zum Landeshundegesetz(VV LHundG
NRW) RdErl. des Ministeriums für Umwelt und
Naturschutz,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
schutz- VI-7-78.01.52 - vom 02/05.2003.

(4) 오스트레일리아

Animal Care and Protection Act 2001 (Queensland, Australia).

Animal Welfare Act 1992 ACT.

Australia Capital Territory Domestic Animals Law 2000.

참 고 문 헌

Charter for responsible dog ownership in Australia Capital Territory (<http://www.act.act.au/enviro/pets>).

http://www.brisbane.qld.gov.au/residential_services/animals/dogs/index.html.

(5) 뉴질랜드

Christchurch City Dog Control Bylaw 1997.

Dog Control Act 1996.

Dog Registration, <http://www.ccc.govt.nz/animals/DogRegistration.asp>.

Submission the Local Government and Environment Select Committee in the matter of proposed amendments to the Dog Control Act 1996 and in the matter of the Local Government Law Reform Bill No. 2 und Supplementary Order Paper No. 92 (20. June 2003).

(6) 기 타

Allgemeines zur Haustierhaltung, http://www.help.gv.at/74/742000_f.html.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t animals (<http://sedac.ciesin.org/pidb/texts/pet.animals.1987.html>).

Hundehaltung, http://www.help.gv.at/74/741000_f.html.

Tiroler Heimtierhaltungsverordnung 2002.

Änderung der Verordnung über das Halten von Hunden im Kanton Luzern.

부 록

I. 일본가정동물 등의 사육 및 보관에 관한 기준 (평성14년개정공포)

家庭動物等の飼養及び保管に關する基準 (平成 11年 改正公布)

제1 일반원칙

- 1 가정동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외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생명이 있는 가정동물 등의 적절한 사육 및 보관에 책임을 지는 자로서, 동물의 생태, 습성 및 생리를 이해하고 애정을 가지고 가정동물 등을 취급함과 동시에 그 소유자는 가정동물 등이 죽을 때까지 기르도록 노력할 것.
- 2 소유자는 사람과 동물의 공생을 배려하면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거나 생활환경을 해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사육 및 보관에 노력할 것.

제2 정 의

이 기준에서 다음 각 호에서 기재된 용어의 의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동물: 포유류, 조류 및 파충류에 속하는 동물을 말한다.
- (2) 가정동물 등: 애완동물 또는 반려동물(companion animal)로서 가정 등에서 사육 및 관리되고 있는 동물 및 정서의 함양 및 생태관찰을 위해 사육, 보관되고 있는 동물을 말한다.
- (3) 관리자: 정서의 함양 및 생태관찰을 위한 사육 및 보관되고 있는 동물 및 그 사육 및 보관을 위한 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 사육 및 보관에 있어서의 배려

- 1 가정동물 등을 사육하려고 하는 자는 사육에 앞서서 해당 동물의 생태, 습성 및 생리에 관한 지식의 습득에 노력함과 동시에 장애에

있어서의 사육 가능성에 대해서 주택환경 및 가족구성의 변화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는 등 종생사양(終生飼養)의 책무를 완수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

- 2 특히 가축화된 동물이 아닌 야생동물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사육 및 보관을 위해서는 해당 동물의 생태, 습성 및 생리에 맞는 특별사육 및 보관을 위한 여러 조건들을 정비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양도가 어려워 사육의 중지(中止)가 용이하지 않은 점,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종(種)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그 사육에 앞서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 더욱이 그러한 동물은 일단 도주 등에 의해 자연생태계에 이입된 경우에는 생태다양성의 보전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육자의 책임은 중대하고 그 점을 충분히 자각할 필요가 있을 것.

제4 공통기준

1 소유의 명시

가정동물 등의 소유자는 그 책임소재를 밝히고 도주한 가정동물 등의 발견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명찰, 각환(脚環), 마이크로칩 등을 장착하는 등 동물의 종류를 고려하여 쉽게 떨어지거나 소실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소유하는 가정동물 등이 자기의 소유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장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할 것.

2 건강 및 안전의 보장과 유지

소유자 등은 아래 기재된 사항에 유의하여 가정동물 등에게 필요한 운동, 휴식 및 수면을 확보하고, 그 건전한 성장 및 본래의 습성의 발현을 꾀하도록 노력할 것.

- (1) 가정동물 등의 종류, 발육상황 등에 따라서 적정하게 사료 및 물을 줄 것.
- (2) 질병 및 상처의 예방 등 가정동물 등의 일상 건강관리에 힘쓰면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가정동물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의사에 의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I. 일본가정동물 등의 사육 및 보관에 관한 기준

- (3) 소유자 등은 적절한 사육 및 보관에 필요한 때에는 가정동물 등의 종류, 습성 및 생리를 고려한 사육보관시설(이하 「飼養施設」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사육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적절한 일조, 통풍 등의 확보를 꾀하고, 시설 내에 있어서 적절한 온도나 습도 유지 등 적절한 사육환경을 확보함과 동시에 적절한 위생상태의 유지에 배려할 것.

3 생활환경의 보전

- (1) 소유자 등은 자신이 사육 및 보관하는 가정동물 등이 공원, 도로 등 공공장소 및 타인의 토지, 건물 등을 손괴(損壞)하거나 분뇨 기타의 오물, 털, 깃털 등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노력할 것.
- (2) 소유자 등은 가정동물 등의 분뇨 기타의 오물, 털, 깃털 등의 적절한 처리를 행함과 동시에 사육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여 악취, 해충 등의 발생방지를 꾀하고 주변의 생활환경보전에 힘쓸 것.

4 적절한 사육수(飼養數)

소유자 등은 그 사육 및 보관하는 가정동물 등의 수를 적절한 사육환경의 확보, 終生飼養의 확보 및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로 하도록 힘쓸 것.

5 번식제한

소유자는 그 사육 및 보관하는 가정동물 등이 번식하여 사육수가 증가해도 적절한 사육환경 및 종생사양(終生飼養)의 확보 또는 적절한 양도가 자신의 책임으로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가정동물 등에 대해서 거세수술, 불임수술, 자웅(雌雄)의 분별사육 등 그 번식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6 동물의 수송

소유자 등은 가정동물 등의 수송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고, 동물의 건강 및 안전과 동물에 의한 사고의 방지에 노력할 것.

- (1) 가정동물 등의 피로와 고통을 가능한 한 적게 하기 위해, 되도록 짧은 시간에 의한 수송방법을 선택함과 함께 수송에 있어서 필요에 따른 적절한 휴식시간을 확보할 것.

부 록

- (2) 가정동물 등의 종류, 성별,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분해서 수송방법을 정함과 동시에 수송에 이용되는 용기 등은 동물의 안전확보 및 동물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 및 구조의 것을 선택할 것.
- (3) 수송중의 가정동물 등에게 적절한 간격으로 급식 및 급수를 함과 동시에 적절한 온도, 습도 등의 관리, 적절한 환기 실시 등에 유의할 것.

7 동물에 기인하는 감염성질병에 관한 지식의 취득(修得) 등

- (1) 소유자 등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가정동물 등에 기인한 감염성질병에 대해서 동물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기타의 정보를 기본으로 수의사 등 충분한 지식을 가진 자의 지도를 받는 등으로 인해,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사육 및 보관에 있어서 감염 가능성에 유의하고 적절한 접촉에 그치는 등 스스로의 감염뿐만 아니라 타인에의 감염 방지에도 노력할 것.
- (2) 가정동물 등에 접촉하거나 가정동물 등의 배설물을 처리한 때에는 손가락 등을 충분히 씻고 필요에 따라 소독을 할 것.

8 도주방지 등

소유자 등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고, 가정동물 등의 도주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도주한 경우에는 스스로의 책임으로 신속하게 수색하여 포획할 것.

- (1) 사육시설은 가정동물 등의 도주방지를 배려한 구조로 할 것.
- (2) 사육시설의 점검 등, 도주방지를 위한 관리에 노력할 것.

9 위해방지

소유자 등은 사람에게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가정동물 등을 사육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고, 도주방지 등 인신사고의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

- (1) 사육시설은 동물이 탈출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 (2) 사육시설은 사육을 담당하는 자가 위험을 수반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I. 일본가정동물 등의 사육 및 보관에 관한 기준

- (3) 소유자 등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의 도주시의 조치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강구하고 도주시의 사고방지에 노력할 것.
- (4) 소유자 등은 사육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필요한 보수를 함과 동시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을 확인하는 등 도주방지를 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5) 포획 등을 위한 기재(機材)를 상비하고, 당해 기재(機材)에 관해서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정비해 둘 것.
- (6) 소유자 등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가정동물 등이 사육시설에서 도주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근처 주민에게 고지하고, 도주한 동물의 포획 등을 행하며, 가정동물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10 긴급시 대책

소유자 등은 지진, 화재 등의 비상재해시에 취해야 할 긴급조치를 정함과 동시에 이동용 용기, 비상식의 준비 등 피난에 필요한 준비를 하려고 노력할 것. 비상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가정동물 등을 보호하고, 가정동물 등에 의한 사고방지에 노력함과 동시에 피난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가정동물 등의 적절한 피난장소의 확보에 노력할 것.

제5 개의 사육 및 보관에 관한 기준

1 방목 방지

개의 소유자 등은 울타리 등으로 둘러싸인 자기의 소유지, 실내 기타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못하는 장소에서 사육 및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의 방목을 하지 않을 것.

2 계류

개의 소유자 등은 개를 계류하는 경우에는 계류되어 있는 개의 행동범위가 도로 또는 통로에 접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3 교육 및 훈련

개의 소유자는 적당한 시기에 사육목적 등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올바른 습관을 가르침과 동시에 특히 소유자 등의 제지에 따르도록 훈련에 노력할 것.

4 개의 소유자 등은 개를 도로 등 실외에서 운동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

- (1) 개를 제어할 수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운동시킬 것.
- (2) 개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망(引網)의 점검 및 조절 등에 배려할 것.
- (3) 운동장소, 시각 등을 충분히 배려할 것

5 개의 소유자는 어쩔 수 없이 개를 계속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적정하게 사육할 수 있는 자에게 해당 개를 양도하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사육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도도부현 등(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화48년 법률 105호)제1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도도부현 등을 말한다. 이하 동일)에 거래를 구할 것.

6 개의 소유자는 강아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유 전에 양도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그 사회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양도하도록 노력할 것. 또한 양도를 받은 자에 대해 사회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

제6 고양이의 사육 및 보관에 관한 기준

1 고양이의 소유자 등은 주변환경에 따르는 적절한 양육 및 관리를 하여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

2 고양이의 소유자 등은 질병의 감염방지, 예상치 못한 사고방지 등 고양이의 건강과 안전 유지의 관점에서 실내 사육에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실내 사육 이외의 방법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의 질병감염, 예상치 못한 사고의 방지 등 고양이의 건강과 안전 유지에 충분히 배려할 것.

I. 일본가정동물 등의 사육 및 보관에 관한 기준

- 3 고양이의 소유자는 번식제한에 관한 공통기준 외에, 실내사육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거세수술, 불임수술 등 번식제한의 조치를 강구할 것.
- 4 고양이의 소유자는 어쩔 수 없이 고양이를 계속 키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적정하게 사육할 수 있는 자에게 당해 고양이를 양도하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사육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도도부현 지사 등에게 거래를 요구할 것.
- 5 고양이의 소유자는 새끼고양이의 양도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유 전에 양도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그 사회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양도하도록 노력할 것. 또한 양도를 받은 자에 대해 사회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

제7 학교, 복지시설 등에 있어서 사육 및 보관

- 1 관리자는 동물사육 및 보관이 수의사 등 충분한 지식과 사육경험을 가진 자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본 기준의 각 항에 근거한 적절한 동물의 사육 및 보관 그리고 동물에 의한 사고방지에 노력할 것.
- 2 관리자는 사육, 보관하는 동물에 대해서 사육을 담당하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동물이 함부로 음식물 등을 받거나 상처입거나 고통을 주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할 것.

제8 기 타

소유자 등은 동물의 도주, 방목 등에 의해 야생동물의 포식, 재래종의 압박 등의 자연환경보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과 동물의 공생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를 할 것.

제9 준 용

가정동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개 또는 고양이에 대해서는 해당동물의 사육 및 보관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본 기준을 준용한다.

II.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개보유법(2002년 12월 18일)

Hunde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Landeshundegesetz-LHundG NRW) vom 18.12.2002

제 1 조 목적

이 법의 목적은 개 또는 개와 인간과의 사안에 적절하지 못한 환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가능한 위험을 예방적으로 저지하는 것이다.

제 2 조 일반적인 의무들

- (1) 개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사육되어야 하고 감독되어야만 한다.
- (2) 개는 다음의 지역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적절한 줄에 묶여서 데리고 다녀져야 한다.
 1. 보도, 상점영역, 도심, 군중이 많이 다니는 도로와 지역,
 2.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울타리가 없는 공원, 정원, 녹지지역과 특히 예외적으로 개가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지역이 지정된 어린이 놀이터,
 3. 공공집회, 엘리베이터, 거리축제와 그 밖에 공공건물, 학교, 유치원에서 행해지는 군중들이 모이는 행사.
- (3) 개가 공격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키워지거나 교배되거나 교육되는 것은 금지된다. 이는 허가된 경비업의 범위 내에서 영업규정 제34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 위험한 개

- (1) 이 법에서의 위험한 개는 제2항에 의해 위험성이 예상되거나 개별적인 경우 제3항에 의해 위험성이 확정되는 개다.
- (2) 위험한 개는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포드쉐어 테리어, 스탠포드쉐어 불테리어, 불테리어와 그 품종들간의 교배 및 이미 언급한 품종과 다른 품종들간의 교배로 태어난 개이다. 제1문에 따른 교배는 이미 언급된 품종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경우를

말한다. 의심스러운 경우에 개 소유주는 제1문에 따른 교배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3) 개별적인 경우에 위험한 개는

1. 제2조 제3항에 반하여 공격성강화를 위해 교육, 사육, 교배된 개
2. 경비견으로서 또는 조련사의 표시에 의해 사람이나 가축을 공격하도록(Zivilschärfe) 교육을 받는 중이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한 개
3. 형법상의 행동에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인데 사람을 문 개
4.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방법으로 뛰어오른 개
5. 자기가 공격을 받지도 않았고, 다른 개가 복종의 자세를 보였음에도 몰아서 다른 개에게 상해를 입힌 개
6. 제어되지 않은 야생동물, 가축, 고양이 또는 다른 개를 쫓거나 물거나 핥은 개

제1문에 의한 위험성의 인정은 공수의의 감정에 따라 관할관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 4 조 허 가

(1) 위험한 개를 보유하거나 보유하려고 하는 자는 권한있는 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신청을 한 사람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허가된다.

1. 만 18세 이상일 것.
2. 필요한 사안지식(제6조)와 신뢰성(제7조)을 가질 것.
3. 개를 안전하게 줄에 묶어 보유하고 데리고 다닐 수 있을 것(제5조 제2항 제1문).
4. 교육, 길들이기, 보유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 설비 및 자유공간이 탈출이 불가능하고 행동에 적합한 숙소를 제공할 것을 보장할 것.
5. 특별한 책임보험(제5조 5항)을 체결할 것.
6. 위조할 수 없는 개의 인식표(제7항)를 증명할 것.

(2) 특별히 기타 보유에 공·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제3조 제2항 또는 제3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의한 개의 보유에 대한 허가를 받게 된다. 특별한 사적인 이해는 위험한 개의 보유

가 개 소유자의 위협되는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 (3) 제1항 4호에 따른 전제조건외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을 한 사람은 권한있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공수의에게 위협한 개가 머물게 될 울타리 쳐진 사유지에 들어오는 것을 가능하고 하고, 필수적인 확인을 하는 것을 수인해야 한다.
- (4) 허가는 기간을 정하여 내려지고 조건과 부담이 첨부될 수도 있다. 허가는 철회의 보유 하에 내려질 수도 있다. 부관은 사후적으로 삭제, 변경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 (5) 허가는 모든 주영역에 유효하다. 개소유주의 거주지의 변경의 경우에 새로운 거주지관할 관청은 허가의 취소나 철회, 제4항 제 2문에 의한 조치를 할 권한이 있다.
- (6) 울타리 쳐진 사유지 밖에서 위협한 개를 데리고 다니는 경우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허가증이나 그 사본을 소지하여야 하고, 통제에 권한있는 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제시하여야만 한다.
- (7) 제1항 4호에 따른 위조가 불가능한 개의 인식표는 전자적으로 읽을 수 있는 표시(마이크로칩)에 번호를 저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관할관청은 저장된 번호를 그의 임무의 수행의 범위 내에서 법률에 따라 개의 소유주의 인적상황을 사용하여도 된다. 해당 기관은 저장된 번호를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개의 권한 있는 기관에게 종합적인 파악을 위해 전달하여야 한다.

제 5 조 의 무

- (1) 울타리 있는 사유지 내에서는 위협한 개는 주인의 뜻에 반하여 밖으로 나가서는 안되도록 보유되어야 한다.
- (2)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과 같은 울타리 있는 사유지의 밖에서와 공동주택의 통로에서 위협한 개는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줄에 묶어 데리고 다녀야 한다. 이는 개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위협한 개는 무는 것을 막기 위해 입마개를 하거나 그와 같은 효과를 내는 장치를

해야 한다. 제3문은 생후 6개월이 되지 않은 개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 (3) 관할관청은 개의 소유주가 공적 안전을 위한 위험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증명하며 제3조 제2항에 따른 위험한 개를 위해 제2항 제1문과 제3문에 따른 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경우 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이 증명은 동물보호법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행동시험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제4조 제4항, 제5항과 제6항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4) 개의 소유자는 위험한 개를 줄에 묶어 보유하고 데리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른 감독자는 그가 제4조 제1항 제2문 제2호의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만 18세 이상이고, 위험한 개를 안전하게 보유하고 데리고 다닐 수 있을 경우에만 울타리 쳐진 사유지의 외부에서 위험한 개를 데리고 다닐 수 있다. 소유자 또는 감독자는 울타리 쳐진 사유지 외부에서는 2문의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위험한 개를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마리의 위험한 개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5) 위험한 개의 소유자는 개로 인해 발생한 인명 및 재물손괴의 배상을 위해 인명사고일 경우 최소보장액이 500,000 유로,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최소보장액이 250,000 유로에 달하는 책임보험을 체결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6) 위험한 개를 양도하거나 경매할 경우에는 제4조의 허가를 보유한 사람에게만 행해져야 한다. 제1문은 동물보호소에 의한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 때는 위험한 개의 전달을 위해 기간을 정한 부양계약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사실을 해당 관청에게 미리 신고하였고 그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제12조 제1항이 적용된다.

제 6 조 전문지식

- (1) 사람이나 가축의 생명과 건강에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위험한 개를 보유하고 이끌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는 필

부 록

- 수적인 전문지식(제4조 제1항 제2문 제2호)을 소유해야 한다.
- (2) 전문지식의 증명은 공수의의 전문지식확인증에 의해 교부된다.
 - (3) 제1항에 의해 전문지식을 가진 자는
 - a. 의사 및 연방수의사명령 제11조에 의한 직업허가의 소지자.
 - b. 사냥자격증소지자나 수렵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자.
 - c. 개의 사육과 보유 또는 개의 매매에 관해 동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a 또는 b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d. 경찰견인도자.
 - e. 제10조 제3항에 따른 인식에 근거하여 전문지식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는 자.

제 7 조 신뢰성

- (1) 원칙상 다음에 언급된 자는 필수적인 신뢰성(제4조 1항 2문 2호)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특히
 - 1. 고의적인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침해, 강간, 포주행위, 토지 및 주거침입죄,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 공동체 위협적인 범죄행위 또는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
 - 2. 위험한 개를 허가받지 않고 보유한 형법상의 범죄(형법 제143조)를 저지른 자.
 - 3.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
 - 4. 동물보호법, 무기법, 전쟁무기통제에 관한 법률, 폭발물법, 연방사냥법 위반죄로 판결을 받았고, 마지막 판결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아직 그 기록이 삭제되지 않은 자. 행정적 명령에 의해 시설에 구금된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 (2) 원칙적으로 다음의 자는 필수적인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 특히
 - 1. 동물보호법, 개수입제한법, 무기법, 전쟁무기의 제한에 관한 법 또는 연방사냥법을 위반한 자.
 - 2. 이 법의 규정을 반복해서 또는 중하게 위반한 자.
 - 3. 정신상의 질병에 근거하여 또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인 장애로 인해 민법 제1897조에 의해 보호를 받는 자 또는
 - 4. 알코올중독 또는 마약중독인 자.

- (3) 신뢰성의 증명을 위해 위험한 개의 소유자는 연방중앙등록법 제 30조 제4항에 따라 관청에게 인도자격증(Führungsschein)을 신청해야 한다. 연방중앙등록법에 의해 해당 등록관청이 인도자격증의 발부를 위해 첨부서류를 찾는 것은 해당 관청의 권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항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 개의 소유주에게 공수의 또는 전문의의 감정서의 제출이 요구될 수도 있다.

제 8 조 신고의무와 보고의무

- (1) 위험한 개의 보유, 영업, 양도와 재산권업무에 대해 개의 소유자는 해당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주지역 내에서의 이사와 다른 거주지역으로의 이사 및 개가 죽었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거주지의 변경은 새로운 거주지의 해당 행정청에게 보고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의 소유주의 변경에는 새로운 개의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 (2) 위험한 개를 경매하거나 양도하려는 자는 취득자에게 이 개가 위험한 개로 다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3) 거주지의 변경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당 관청은 현재 해당 관청에게 제3조에 의한 확인, 허가 및 면제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 (4) 개세금의 부과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서는 이 법의 집행을 위해 제13조에 따른 해당 관청에게 필수적인 개의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를 전달해야 한다.

제 9 조 번식, 교배와 매매금지, 불임수술

제3조 제3항의 의미에서의 위험한 개의 사육, 교배와 매매는 금지된다. 제3조의 위험한 개의 소유주는 다른 개와 교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권한있는 관청은 제1문과 제2문의 위반이 있을 경우 제3조의 위험한 개의 불임수술을 명해야 한다.

제10조 특정한 품종의 개

- (1) 아라노, 어메리칸 불독, 불마스티프, 도고 아르젠티노, 필라 브라질레이로, 마스티프, 마스티노 에스파톨, 마스티노 나폴리타노, 로트바일러, 도사이누와 같은 품종이 그 품종사이의 교배 및 다

른 품종과의 교배로 생겨난 개에 대해서는 제2항의 예외가 아닌 경우에는 제4조가 적용되고, 제2항과 제3항에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제5조 내지 제8조도 적용된다.

- (2) 제5조 제3항 제3문의 예외로 행동시험(Verhaltensprüfung)은 공인된 전문가 또는 공인된 전문시설에서 시행될 수 있다.
- (3) 제6조 제2항의 예외로 전문지식자격증(Sachkundebescheinigung)은 공인된 전문가 또는 공인된 전문시설에서 발부될 수 있다.

제11조 큰 개

- (1) 어른 개가 어깨높이 40 cm이상 또는 몸무게 20 kg이 넘을 때 개의 보유에 대하여 개의 소유주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만 한다.
- (2) 큰개는 주인이 필요한 전문지식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개에게 위조가 불가능한 마이크로칩으로 표시되고, 개를 위해 책임보험을 체결하고, 해당 관청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뢰성 심사의 방법과 종류는 해당 관청에 놓여있다. 제4조 제7항, 제5조 제5항과 제6조 제3항이 적용된다.
- (3) 전문지식의 증명은 공인된 전문가, 공인된 전문시설 또는 수의 사위원회로부터 임명된 수의사의 전문지식증명을 통해 전문지식의 증명서가 발부될 수 있다.
- (4) 이 법의 효력발생 전에 동물보호법 또는 질서유지차원에서 발령된 사안을 위반한 적 없이 3년 이상 큰 개를 보유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해당 관청에 서면으로 확약한 자는 개의 보유를 위해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본다.
- (5) 해당 관청은 개의 소유자의 신뢰성에 대해 의심을 살만한 관련성이 있을 경우 신뢰성의 증명을 위한 인도증(Führungszeugnis zum Nachweis der Zuverlässigkeit)의 신청을 명할 수 있다.
- (6) 큰 개는 울타리쳐진 사유지의 외부와 공공도로, 길거리, 광장 등의 건물이 있는 지역의 내부에서는 줄에 묶어서 데리고 다녀져야 한다. 제5조 제2항 제2문이 적용된다.

제12조 명령권한

- (1) 해당 관청은 개별적인 경우에 존재하는 공적 안전에 대한 위협, 특히 이 법조문의 위반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2) 이 법조문 또는 이 법에 의거한 규정들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하였거나 반복하여 위반을 한 경우, 허가전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관청이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허가가 거절된 경우에는 위험한 개 또는 제10조 제1항의 의미의 개의 보유는 거절된다. 이 법조문 또는 이 법에 의거한 규정들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하였거나 반복하여 위반을 한 경우, 제11조 제2항에 따른 허가전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그 허가전제요건을 관청이 정한 기간 내에 충족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의 큰 개의 보유는 거절될 수 있다. 이러한 거절은 위험한 개,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의 의미의 개의 장래보유의 거절과 결부될 수 있다. 거절의 경우에는 개의 소유주로부터 개를 데려와서 적당한 사람이나 시설에 주도록 명령할 수 있다.
- (3) 압류권한이 있고, 존속 또는 새롭게 생겨나는 경찰법 제45조 제1항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 또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 사용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수의의 동의로 생명과 신체에 현실의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압류된 개의 안락사가 명해질 수 있다.

제13조 해당기관

이 법에서의 해당기관이라 함은 개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 질서관청이다. 이 법에 의해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시에 의한 의무사무로 수행한다.

제14조 다른 주의 결정과 증명서의 인정

다른 주의 해당기관에서 발부된 허가, 면제 또는 전문지식보유증은 그것이 이 법과 이 법에 근거해 내려진 명령들과 본질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해당관청에 의해 인정된다.

제15조 질서행정청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규정들의 효력

- (1) 이 법과 이 법에 의해 내려진 질서관청의 명령이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 한, 질서행정청법(Ordnungsbehördengesetz)의 조문이 적용된다.
- (2) 개와 관련된 지역 질서행정청의 명령에서의 규정들은 영향을 받지 않거나 이 법률의 규정 또는 이에 근거해 내려진 명령이 서로 상치되지 않는 한 새롭게 받아들여진다.

제16조 질서행정청의 명령들

- (1) 이 법의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질서행정청의 명령들은 수의사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발령한다. 질서행정청적인 명령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규정된다.
 1. 제5조 제3항 제3문의 행동시험의 절차와 내용,
 2. 위험한 개, 제10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에서 언급한 개를 보유하려는 사람의 전문지식에 대한 요구사항 및 전문지식시험의 절차,
 3. 제10조 제3항과 제11조 제3항에 따른 전문지식증명서의 부여와 제10조 제2항의 행동시험에 권한을 가진 전문가 또는 전문시설의 전체 조건들,
 4. 제10조 제3항과 제1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전문가와 전문시설을 통한 전문지식시험과 제10조 제2항의 행동시험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요구조건들,
 5. 이 법에 의해 등록된 개의 중앙차원의 종합작성에 권한 있는 기관 및 정보전달의 방법
질서행정청법 제26조 제3항이 적용된다.
- (2) 수의사협회를 관장하는 행정부는 제3조 제2항과 제10조 제1항에서 언급한 품종을 넘어서서 사람과 짐승에 대한 위협의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보유, 교육과 감시를 위해 질서행정청 규정으로 더 넓은 범주의 품종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 제3문이 적용된다.

제17조 적용범위의 예외

이 법은 관청의 위한 경비견, 재난구조를 위한 개와 맹인안내견에게는 제2조 제1항의 예외가 인정된다. 신체장애자안내견, 양치기견 또는 사냥시의 사냥견은 이 법에 따른 특정한 목줄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18조 형벌규정

- (1) 2년 이하의 자유형과 벌금형이 부과된다. 누군가가
 - 1. 개를 부추겨 사람이나 동물을 쫓게 했다거나
 - 2. 제2조 제3항에 반하여 강화된 공격성의 목적을 가지고 개를 교육했을 때
- (2) 판결에서 범죄에 관련된 개는 압수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형법 제74조 a는 적용되어야 한다.

제19조 질서위반

- (1) 누군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질서위반이다.
 - 1. 개에 의해 인간이나 동물에 대해 위협을 끼치지 않도록 개를 보유하고 데리고 다니고 감시하지 못한 경우(제2조 제1항 위반)
 - 2. 개를 목줄을 하지 않고 데리고 다닌 경우(제2조 제2항 위반)
 - 3. 울타리쳐진 사유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확인을 수인하지 않은 경우(제4조 제3항 위반)
 - 4. 위험한 개 또는 제10조 제1항의 개를 울타리쳐진 사유지에서 주인의 의사에 반해서 내보낸 경우(제5조 제1항 위반)
 - 5. 위험한 개 또는 제10조 제1항의 개에게 묶어놓지 않거나 적절한 줄로 묶어 데리고 다니지 않은 경우(제5조 제2항 제1문 위반)
 - 6. 위험한 개 또는 제10조 제1항의 개에게 입마개 또는 그와 비슷한 효과를 가진 도구를 장착하지 않고 데리고 다닌 경우(제5조 제2항 제3문 위반)
 - 7. 주인으로서 위험한 개를 안전하게 줄에 묶어 보유하거나 데리고 다닐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제5조 제4항 제1문 위반)

부 록

8. 감독자로서 위험한 개 또는 제10조 제1항의 개를 그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데리고 다닌 경우(제5조 제4항 제2문 위반)
9. 위험한 개를 제5조 제4항 제2문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제5조 제4항 제3문 위반)
10. 동시에 여러 마리의 위험한 개를 데리고 다닌 경우(제5조 제4항 제4문 위반)
11. 제5조 제4항 위험한 개의 보유를 위해 필요한 책임보험계약을 하지 않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위험한 개 또는 제10조의 개를 보유한 경우
12. 위험한 개 또는 제10조의 개를 필수적인 허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제5조 제6항 위반)
13. 신고 또는 보고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
14. 위험한 개들의 교배를 한 경우(제9조 제2문 위반)
15. 제5조 제4항의 중요한 요구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10조 제1항 위반)
16. 큰 개의 보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제1항 위반)
17. 해당관청에 언급된 보유요건들을 증명하지 않고 큰 개를 보유한 경우(제11조 제2항 제1문 위반)
18. 큰 개를 목줄을 하지 않고 데리고 다닌 경우 (제11조 제6항 위반)
 -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9조 제3문에 의한 불임시술의 집행명령 또는 제12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으로 다루어진다.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질서위반은 100,0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4) 제1항과 제2항의 질서위반에 관련된 개는 질서위반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조건하에서 압수될 수 있다.
 - (5) 질서위반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의 행정청은 이 법 제13조의 해당관청이다.

제21조 경과규정

- (1) 2000년 6월 30일의 舊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개규정의 제4조 제1항에 따른 효력있는 질서행정청의 허가는 계속해서 제4조 제1항에 따른 허가로서 유효하다.
- (2) 입마개규정의 면제를 위한 舊법 제6조 제4항의 질서행정청의 결정은 제5조 제3항 1문에 따른 면제로서 계속 유효하다. 제5조 제3항 제2문은 관련이 없다.
- (3) 구법 제1조 제2항의 신고는 제11조 제1항의 신고로 계속 유효하다. 구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개의 표식에 대한 증명서, 전문지식, 신뢰성 및 책임보험의 체결은 이 법의 집행에 있어서 해당관청에 의해 인정되어야만 한다.
- (4) 이 법의 제4조 제2항은 구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지킨 경우라면 이 법의 발효 전에 제3조의 위험한 개를 보유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2조 이 법의 효력에 대한 심사

이 법의 효력은 5년동안의 경험기간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와 전문가의 참여 하에 주정부를 통해 심사될 것이다. 주정부는 주의회에 이 심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발효, 폐지

- (1)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동시에 2000년 6월 30일의 주의 개규정(GV. NRW. S. 518b)은 폐지된다.
- (2) 제1항과는 달리 제4조의 알라노와 어메리칸 불독 및 그 품종끼리의 교배종, 다른 품종과의 교배종은 제1항 제1문에서 정한 기간으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휘한다.

III.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 市의 개통제에 관한 조례 (Christchurch city Dog Control Bylaw 1997)

건강법(the Health Act 1956), 지방정부법(the Local Government Act 1974), 개 통제법(the Dog Control Act 1996)에 준하여 확정되는 권한 및 이하의 모든 다른 권한들은 크라이스트처치 市 의회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을 합법화한다.

1. 소 제

이 조례는 크라이스트처치 市의 개통제에 관한 조례(Christchurch city Dog Control Bylaw 1997)라고 불리운다.

2. 발효일

이 조례는 1997년 7월 1일에 발효될 것이다.

3. 조례의 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크라이스트처치 市의 지역행정에서 개를 키우는 것을 감독(관리)하기 위함이다.

4. 해 석

이 조례에서 법문이 다른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승인된” 은 그 의회에 의해서 혹은 대신하여 권한을 갖는 의회의 관리에 의해서 승인된 것을 의미한다.

“어린이용 놀이 기구” 란 공공 사용을 위해 의회에 의해 제공되고 유지되는 스케이드보드 램프와 아이들의 물놀이터를 포함한 어린이용 놀이 기구를 의미한다.

“시“(市)란 크라이스트처치 시를 의미한다.

“의회” 란 크라이스트처치 시의 의회를 의미한다.

“지역 계획” 이란 자원관리법(the Resource Management Act 1991)에 준한 크라이스트처치 시의 지역 계획을 의미한다.

III.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 市의 개통제에 관한 조례

“개 운동지역”, “개의 입장이 금지된 지역”, “개의 입장이 제한된 지역” 이란 이 조례의 제8항에 근거하여 의회에 의하여 개 운동지역, 개의 입장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지역으로 선언된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

“개 감독관(Dog control officer)”, “개경비원(Cog range r)”, “소유주”, “공공장소”, “직업견” 이란 개 통제법(the Dog Control Act 1996)의 제2조에서의 의미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환경서비스 관리자” 란 일정기간동안 의회에 의해서 임명되어서 환경 서비스 관리자의 위치를 지키며,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포함하는 관리를 의미한다.

“보류지(Reserve)” 란 의회에 의해서 감독되고 관리되는 공공의 휴식과 오락을 위해 마련된 공원, 정원, 농장, 숲, 개방된 공간이나 땅을 의미한다.

“길” 이란 지방정부법(the Local Government Act 1974) 제 315항에서의 의미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5. 개의 수에 대한 제한

- (1) 지역계획상 상업지구, 산업지구, 거주지구, 농촌거주지구로 구획된 모든 토지의 소유자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두 마리 혹은 그 이상의 개(등록여부 상관없음)를 전체 12개월의 기간동안 14일 이상 자신의 토지에서 기르거나, 방치하거나, 남아있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의회로부터의 허가서를 발급받지 않는다면, 그 개들을 기르거나 방치하거나, 남아있도록 허용할 수 없다.
- (2) 허가서에 대한 신청은 의회가 요구하는 서면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되며, 신청 비용이 수반된다.
- (3) 허가서를 위한 신청은 의회가 일반적으로 혹은 어떤 특정한 경우에 요구하는 정보를 의회에 제공해야 한다.
- (4) 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의회는 허가서의 신청을 인정해줄 수 있다. 모든 허가서는 다음의 항에 근거하여 인정한다.
 - (a) 의회가 허가를 해주기에 적절하게 보여지는 조건에 충족될 때,
 - (b) 허가서에 기술된 사항에 관하여 효력을 가질 때만,(c)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이전될 수 없다.

부 록

- (5) 절차 조항에 근거하여, 허가서에 의해 부과된 어떠한 조건들에 대한 위반을 범한 모든 사람은 이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6. 도로에서의 개의 통제

모든 개의 소유주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개가 도로 위에 있는 동안, 가죽끈 등의 수단에 의해서 효과적인 통제하에 개를 두어야 한다.

7. 도로 이외의 공공장소에서의 개의 통제

이 조례의 다른 조항에 대하여, 개의 소유주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 개가 도로 이외의 공공장소에 있는 동안 목소리, 표시, 가죽끈 등에 의해 효과적인 통제하에 개를 두어야 한다.

8. 개 금지지역, 개 출입제한지역, 개 운동지역

(1) 의회는 때때로 그 도시전체에 배포되는 최소한 한가지이상의 신문에, 개 금지지역, 개 출입제한지역, 개 운동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장소에 대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2) 의회는 때때로 그 도시전체에 배포되는 최소한 한가지이상의 신문에, 이 조항에 의하여 가해진 수정이나 철회 등에 대해서 공지하여야 한다.

(3) 의회는 결정에 의해 다음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a) 개 금지지역이나 개 출입제한지역 혹은 개 운동지역에 대한 간판을 부착한다.

(b) 개 금지지역이나 개 출입제한지역 혹은 개 운동지역의 경계를 정한다.

(c) 개 금지지역이 개들에게 공개될 경우에, 낮 시간 및 년도의 기간을 특정한다.

(d) 개를 금지된 장소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장소들을 특정한다.

(e) 환경서비스관리부의 관리에게 위임된 모든 계획들을 참고하여 개 금지지역이나 개 출입제한지역 혹은 개 운동지역을 기술한다.

(4) 의회는 의회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간판이나, 표시물, 공고장 등을 설치하거나 세워둠으로써 각각의 개 금지지역이나 개 출입제한지역 혹은 개 운동지역을 표시해야 한다.

III.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 市의 개통제에 관한 조례

- (5) 모든 개의 소유주나 책임 있는 사람은 그 개가 의회가 이 조항에 의해 권한을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개 금지지역에도 들어가지거나 머무르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6) 모든 개의 소유주나 책임 있는 사람은 그 개가 개 출입제한지역에 있는 동안, 가족근에 의해서 효과적인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

9. 직업견에 대한 면제

이 조례의 제6항과 제8항의 내용은 직업견이 일을 하거나 일터로 그 소유주에 의해서 이동되는 경우, 그 소유주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통제 하에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10. 밤시간 동안 제한되는 개

이 조례의 제6항과 제8항에 준하여, 모든 개의 소유주나 책임 있는 사람은 매일 일몰 후 한시간 반 이후부터 그 다음날 일출 전 한시간 반까지의 기간동안 그 개가 안전하게 묶여있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효과적으로 감금하거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감독 하에 두어야 한다.

11. 어린이 놀이기구 가까이에 있는 개

- (1) 누구도, 모든 개의 소유주나 책임 있는 사람이면서, 지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어린이 놀이기구에서 10미터 범위 내에 있는 보호 지역에 그 개가 들어가거나 남아있도록 허락하여서는 안되며, 만약 그러한 경우에 그 개는 가족근에 의해서 효과적인 통제하게 묶여있어야 한다.
- (2) 이 조항의 (1)에서 어떠한 것도 직업견에 대해서 그 개가 일하는 동안 소유주에 의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감독 하에 놓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2. 차량에서의 개

누구도 그 개가 그 짐칸을 넘어 닿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짧은 길이의 가족근이나 시슬에 의해서 항상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모든 도로 혹은 공공장소상의 차량의 열려진 짐칸에 개를 태울 수 없다.

13. 병에 걸린 암컷의 개

(1) 다음의 개의 소유주로서 모든 사람은

(a) 병이 든, 혹은

(b) 발정기의 암컷인

그 개를 항상 사유지든 공공장소나 땅이든 간에 주변을 자유로이 배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감금시켜야 한다.

(2) 이 조항 (1)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가 그 개의 소유주의 사유지이거나 그 점유자의 동의를 얻은 다른 사유지에서 적절하게 운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항상 운동을 하는 동안 그 개의 소유주에 의해서 가죽끈이나 사슬에 의해 효과적인 감독 하에 두어져야 하며 그 개에게 안전하게 목걸이를 부착해야 한다.

14. 개의 오물

공공장소나 그 개의 소유주 혹은 책임 있는 사람에 의해 점유되는 땅이나 가택이외에 모든 땅이나 가택에 배설한 개의 소유주이거나 책임 있는 사람은 그 오물들을 즉시 제거해야 한다.

15. 개의 감금

모든 개 경비원, 개 감독관이나 순경은 이 조례에 반하여 공공장소를 자유로이 배회하는 개를 감금할 수 있다.

16. 폐 지

이 조례에 대해 별표에 명기된 세부규칙들은 이로써 폐지된다.